

민주 사법

준비 2호
2019. 7.

시론

김인회

사법모니터링

민변 사법정책연구지원팀

권력기관개혁 중간평가

- | | |
|----------|-----|
| ① 검찰 개혁 | 서희원 |
| ② 경찰 개혁 | 오민애 |
| ③ 국정원 개혁 | 이주희 |

입법의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최용근

민변의 목소리



民主司法

준비 2호
2019. 7.

목 차

- 시론 / 김인회 교수 1
- 사법모니터링 / 민변 사법정책연구지원팀 7
- 권력기관개혁 중간평가 ①
 : 검찰 개혁 / 서희원 변호사 19
- 권력기관개혁 중간평가 ②
 : 경찰 개혁 / 오민애 변호사 50
- 권력기관개혁 중간평가 ③
 : 국정원 개혁 / 이주희 변호사 90
- [입법의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최용근 변호사 .. 118
- 민변의 목소리 134

시론: 초발심, 리더십, 소통, 그리고 불퇴전의 의지

김인회 교수

홀륭하고 멋진 성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성이다. 그곳에는 행복이 있다. 평화와 안전이 있다. 모두가 모두를 존중하는 곳이고 고통도 없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홀륭한 성이 실제로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이제 정글과 사막, 도시를 헤치고 성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 많은 권력과 명예, 재물과 안락함을 주기 때문이다. 아예 출발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다. 정글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맨다. 사막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 도시에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쾌락을 충족시켜 주므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성으로 가기 위해 계속 걸어간다.

지도는 처음에는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도는 갈수록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 지도자들도 우왕좌왕한다. 직선으로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성이 그렇게 멋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중간에 다른 성을 보여준다. 전설의 성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만 하지 않느냐면서 이제 고생도, 싸움도 그만하자고

한다.

이때 전설의 성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 같으면 다음의 세 가지를 고르겠다. 첫째, 처음의 마음. 둘째,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셋째, 대중과 함께 하는 소통능력.

초발심, 첫 맹세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과 사회는 항상 변한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현재 뿐이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있는데 과거와 미래가 없으니 현재라는 것도 없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현재인 것이다. 사람의 행위에 의해 세상과 자신이 변하고 결정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고 행위가 능성이다. 그 행위가능성은 바로 초발심, 첫 맹세에서 비롯된다. 첫 맹세가 크면 행위가능성이 커지고 행위가능성이 커지면 행위가 커지고 행위가 커지면 자신도 세상도 크게 바뀐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자신이 생각했던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전설의 성을 가기로 한 큰 초발심을 잊으면 작은 변화에 만족한다. 행복과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모든 사람이 다 큰 맹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진하는 것도 아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큰 맹세를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또 사람이다. 그렇다고 자기만 전설의 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실제로 큰 맹세를 한 사람은 혼자만 가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모두 전설의 성으로 가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리더십은 타인을 돕지만 자신이 돕는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다. 남을 돕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진리추구이기 때문이다. 난관을 만나면 난관을 해결하고 괴물이 나타나면 괴물을 물리친다. 장애를 만나면 뛰어넘고 대중들에게 용기를 준다. 물리나지 않는 불퇴전의 결의로 길을 걷는다. 전설의 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이르는 길도 안다. 리더십은 단 한명일 수도 있지만 집단일 수도 있다. 한명보다는 집단이 훨씬 좋다. 리더십 집단이 존재하면 더욱 대중들이 믿고 따른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중들과 함께 하는 소통능력이다. 대중들과 함께 하되

대중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막연히 전설의 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이 될 때인지, 지금은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할 때인지 등을 잘 알아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 길을 따라 나선 대중들은 전설의 성에 가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도와 함께 전설의 성으로 가야한다. 난관도, 괴물도 대중들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

갑자기 전설의 성 이야기가 나오니 생소할 것이다. 초발심, 리더십, 소통능력을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이 말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만 법률가라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개혁과 사법개혁에도 적용된다. 그렇다. 정채된 권력기관개혁과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할 때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 촛불혁명을 낳은 국정농단 사태는 권력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검찰개혁이 촛불의 명령 1호였다. 국정농단 사태의 배후에 있었던 존재는 정치검사였다.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현실이 폭로되었다. 사법부 상층부는 정치권력과 재판을 거래하면서 사법부의 이익을 탐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이 시작되었다.

개혁의 길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훌륭한 성에는 도착하지 못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왔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라는 장애는 예상한 것이었지만 예상보다도 더 강력하다. 정치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국회는 사실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버렸다. 패스트 트랙으로 일부 검찰개혁 법률안을 상정한 것은 큰 성과다. 하지만 국정원개혁이나 사법개혁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타협은 불가피하지만 본질을 바꿀 정도의 타협은 곤란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안은 너무 많이 변해서 애초의 구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다.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의 위상이 축소되다 못해 국회의 간섭으로 국회의 산하기구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한다.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수사

를 하는 공수처장에게 질문하고 질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무부장관이 질 뿐, 검찰총장은 지지 않는다. 공수처장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출석, 보고, 답변할 수 있으나 국회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부담이다.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는 일은 없다.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국회의 동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정도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이 삼부 요인의 수준이란 말인가? 그런데 공수처장은 장관도 아닌 차관으로 대접받는다. 이쯤 되면 공수처의 독립성을 해치는 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수처의 규모는 논의를 거듭할수록 축소되고 있다. 견제장치는 잔뜩 만들고 있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짜 성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사법개혁은 부분적으로만 시작했을 뿐,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사법개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부분적으로 법원행정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제도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최근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나마 멋진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중요한 사법개혁 과제인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개혁, 사법부 과거사 정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 등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법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관들도 국민들도 다시 불행해 질 수 있다. 사법농단사태가 발생하면 재판을 하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재판이 객관적 사실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재판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재판을 하는 법관들도 괴롭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재판을 할 것이라고 선서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결과가 바뀌니 법관으로서 괴롭

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사법개혁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모두가 괴로운 현실을 고치려하지 않으니 이보다 더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는가.

공권력개혁, 사법개혁이 난관에 빠졌다.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훌륭한 성이 아닌 그저 그런 집을 두고 이 정도로 타협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권력과 명예, 재물과 안락함을 얻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좋은 시스템이 이들을 교도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니 아이러니다. 이들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었던 자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재판과 함께 전설의 성, 훌륭한 성으로 가야한다.

현재 권력기관개혁, 사법개혁은 딱 막힌 상태로 보인다. 들인 노력에 비하여 결과는 적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무엇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개혁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남기거나 오히려 확장하려는 기득권 편에 선 국회의원과 검사들의 행태도 확인했다. 이들도 막판까지 온 것을 알고 전력을 기울여 반대한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이 순간 개혁세력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설의 성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초발심, 리더십, 소통능력. 원래 진리는 모든 곳에 통용되는 법이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무엇이 될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결의, 즉 불퇴전의 의지가 된다. 반드시 전설의 훌륭한 성에 도달하겠다는 불퇴전의 의지, 모두 함께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불퇴전의 결의, 한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불안해하면서도 품 안에 꼭 안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훌륭한 성으로 데려가겠다는 물러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불퇴전의 결의만으로 모든 개혁을 성공시킬 수는 없지만 불퇴전의 결의가 없다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디테일이라는 핑계로 초발심, 리더십, 소통능력, 불퇴전의 결

의를 희석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권력기관개혁과 사법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民主司法**

사법모니터링

민변 사법정책연구지원팀

◆ 법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발령 (1. 28.)

-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 도입된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단수 추천된 판사 (29기 신진화 부장판사)가 아닌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22기)가 임명됨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부망에 의정부지법의 규모를 볼 때 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역시 추천제가 시행된 대구지방법원장은 추천된 3명의 판사 중 한 명인 손봉기 부장판사(22기)가 임명됨
- 법원행정처 소속 고법 부장판사 4명 → 3명으로 감축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 행정처로부터 분리 후 독자적 활동 보장하려고 하였으나, 법령 정비가 늦어지며 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될 것으로 예상됨
-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는 2. 1. 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33명 → 22명으로 감축)

○ 대법원, 법관 정기인사 실시 (2. 25.)

-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기조에 따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을 감축 (당초 현 상근법관 33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명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실 감축계획을 일부 축소)
- 서울중앙지법 경력대등재판부 10개부 탄생 (2018. 7. 법관대표회의는 “지방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한 뒤 향후 확대시행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

○ 대법원, 기소된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재판업무 배제조치 (3. 8.)

- 3. 5.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6명 (심상철, 임성근, 신광렬, 이태종, 조의

연, 성장호) 재판업무 배제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법관 10명 추가 징계청구 (5. 9.)

- 2019. 3.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 일괄 기소하며 대법원에 66명 관여 법관 비위사실 통보 → 이 중 10명 추가 징계청구 (기소된 8명 법관 중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7. 5.)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규칙 제정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추진 계획 발표
- 규칙(안) 주요 내용:
 - △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
 - △ 위원구성: 대법원장(의장), 법관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인, 전국법관 대표회의 추천 3인), 비법관 4인
 - △ 법관보직인사 관련 논의를 담당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법관 5인) 구성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9. 8. 5. 까지

◆ 법무부 · 검찰

○ 검찰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2. 8.)

- 주요 내용:
 - 1)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 및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위증을 한 사실 확인
 - 2)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과의 협의를 통해 유가려가 마치 참고인인 것처럼 외양을 유지하며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 확인
 -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및 지연제출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행위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된 검증 및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사실 확인
 - 4)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검증 등이 부족하였던 사실 확인
- 권고 내용:
 - 1) 유우성 및 유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함
 - 2)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검찰미래위원회 출범 (2. 14.)**

-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할 검찰미래위원회(외부 전문가로 구성) 출범
- 구성: 윤성식(고려대 명예교수, 위원장), 이국종, 박준영 변호사, 임지봉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
- 검찰 ‘포토라인 관행’ 관련 논의 진행 (2차 정기회의, 2. 27.)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개정 예정 발표 (3. 1.)**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행을 위해 3월 중순 경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
- 지원 대상: 체포된 피의자 중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매년 8,000명 가량)
-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하되, 국가가 피의자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는 우려 반영해 ‘형사공공변호인 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권은 대한변협에 넘긴다는 계획
- 대한변협·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 발표,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뤄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검찰이 형사공공변호의 구성·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권 위축된다”고 지적하며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을 대한변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

○ **대검찰청,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 국회에 전달 (3. 5.)**

-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발의된 자치경찰제 안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담은 답변서 국회 사개특위에 전달
- 해당 답변서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국가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체 의견을 제시함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서 단위 이하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자는 대검찰청의 의견은 경찰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자칫 국가경찰의 와해로 비춰질 수 있다”며 “치안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비현실적 방안”

○ **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3. 13.)**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검찰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시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출국금지제도의 개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신청기준 완화·

수용공간 확충,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 등도 추진할 계획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 권고 (3. 26.)**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검토하고 피해 여성 등 관련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 진행한 뒤 중간보고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함
-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 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권고함
- 경찰의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이중희 등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권고함
- 검찰, 김학의 사건 담당 수사단(여환섭 수사단장) 출범(3. 29.), 기록 검토 후 참고인조사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법무부, 신설 송무국에 검사 파견요청 (4. 5.)**

- 법무부가 송무국 신설을 추진하며 검찰에 검사 파견을 요청(총 12명) 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됨

○ **대검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 폐지 (4. 18.)**

- 검찰청 정식 직제규정에 없는 ‘비(非)직제’로 운영된 지 5년이 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현행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비직제 부서는 최대 5년 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 결과, 대검 검사 정원은 50명 임에도 비직제 운영을 위해 총 9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2018. 5. 기준)

○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수사권고 요청 (4. 23.)**

-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

○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 (4. 26.)**

- 검찰사건처리기준 관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기준을 공개할 것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사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공개할 것

△검찰의 구속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 △음주 운전, 교통사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죄군을 우선 공개대상으로 할 것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 등을 권고

-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해 협의체 설치도 권고

○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입장 표명 (5. 1.)**

-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힘
- 수사권 조정 관련, 행정경찰과 정보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
-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개최,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5. 16.)
- 송인택 울산지검장,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개 건의문 발송 (5. 27.)

○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5. 29.)**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도 권고

○ **검찰과거사위원회,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발표 (5. 31.)**

-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8가지 쟁점(경찰의 농성 진압작전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청와대 차원의 수사개입 여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영장 없는 철거민 부검 결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결과 발표
- 주요 내용: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부족했음 (당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철거민에게는 혐의있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경찰은 무혐의를 전제로 수사)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에 공개하지 않은 검찰 결정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확대함 등
-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 권고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검찰에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 개선,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영장 없는 부검과 관련한 ‘긴급성’ 판단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지휘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권고

<p>○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수사결과 발표 (6.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발표 •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 관련, “3억 원의 최종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을 불기소처분하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만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p>○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7. 8.)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7. 16.)
<p>○ 검찰, 김학의·윤중천 기소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6.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에 따른 중간수사결과 발표 • 김학의(뇌물수수) 구속기소, 윤중천(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구속기소 • 광상도 전 민정수석·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혐의 관련 불기소 •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 진행 불가하였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혐의점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
<p>○ 검찰청 피의자 소환사실 변호인 자동통지제도 전국 실시 (7.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 대한변협의 수사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통지 확대 요청에 대해 2019. 7. 1.부터 피의자 소환사실을 변호사에게 자동통지해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7. 중순경에는 검찰 직구속영장 청구 사실 및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사실을 변호인에게 자동통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 • 대한변협,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사항을 통지받을 의사 확인 및 연락처 등이 추가된 변호사선임신고서(예시) 양식 송부

◆ 경찰

<수사 · 자치경찰 등>

<p>○ 경찰청,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체포시 ‘진술거부권 고지’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신문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체포 시에도 고지하도록 • 피의자가 이러한 권리를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 (현장점검 실시 등도 계획)

○ **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협의 (2. 14.)**

-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한 논의
- 광역 단위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실질화할 계획)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와 여야 추천 받게 하겠다” - 김부겸 장관)
-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함
- 올해 안에 제주,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나머지 두 곳은 논의 중)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 확대해 나갈 계획
- 당정청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125, 홍익표 의원 등 16인) 발의됨 (3. 11.)

○ **경찰대학 학사운영 관련 규정 개정안 공포 (3. 26.)**

-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감소, 2022년부터 일반대 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 선발, 3학년 편입학

○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심의·의결 (5. 20.)**

- “기준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규칙 제정으로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물리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범을 제시”
- 3대 원칙(‘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제시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조사위, ‘밀양 송전탑 건설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 발표 (6. 13.)**

- 8개월간의(’18.10.1.~’19.5.31.)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발표
-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 권고하고, 정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재산적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 마련 촉구

<정보 · 경비>

○ **정보경찰개혁 관련 보도**

-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 개혁 권고안이 나왔고, 2019. 1. 22. 정보경찰활동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정보경찰 활동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 특히 여전히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정보수집에 의존하고 있다’, ‘정보경찰 개혁 논의 당시 청와대가 정보국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정보경찰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의존도 또한 높다면 실제 정보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임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 관련 수사 본격화 (2. 17.)**

- 검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 정보문건에 관하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경찰, 위법성 알고도 대외비 예규를 근거로 정보보고서 열람 후 파기**

- 경찰이 자체 훈령으로 정보보고서를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으로 확인됨 (3. 17.)
- 기록물 등록은 법정사항이어서 ‘열람 뒤 파기’를 훈령으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으로 정했고, 이후 훈령에서 삭제했으나 대외비 예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정보문건을 파기해옴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여론전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정보경찰 활동의 문제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 전직 경찰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으나, 강신명 전 경찰청장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됨

○ **경찰청장,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4. 22.)**

-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치관여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함

○ **경찰개혁입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4. 24.)**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보경찰의 자의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막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함

○ 경찰청, 정보국 개혁 자체 추진

- 내부 조직 규모 축소, 활동범위 엄격 통제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명칭 변경을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29.)

○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5. 29.)

- 주요 내용: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 침해행위를 함
- 권고 내용: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장의 의견 제시 △필요·긴급한 경우에만 집회현장에서 채증 가능하도록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 보완 △집회·시위 해산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을 개선

○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 수사 관련

- 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소 (6. 3.)
- 2019. 6. 3.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됨.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청와대에 문화예술계 동향을 보고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었음.

○ 집회 경찰 무전 녹음 및 보관 관련 규칙 제정 및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규정 마련 (6. 14.)

-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존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49호) 제정하여 9. 1.부터 시행 예정

○ 정보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 개입 사실 확인 (6. 18.)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관련 재판에서 정보국 소속 정보경찰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

◆ 국정원

○ 대공수사권 이관 · 국정원법 개정 관련

- 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 15.)에서 국정원 개혁 필요성 강조하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강하게 요청

○ 정보위원회 관련

- 제367회국회 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 회의결과>

– 2019. 3. 29.(금) 10: 04 개회 ~ 14: 53 산회 (비공개회의)

- | |
|--|
| 1.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2016463] 국가정보활동법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
| 2. 의사일정 제2항 상정 :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채택 |
| 3. 의사일정 제3항 상정 : 업무보고 가. 국가정보원
○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제2차 정보위원회 회의결과>

– 2019. 4. 2. (화) 10: 08 개회 ~ 16: 31 산회 (비공개회의)

- | |
|---|
| 1.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업무보고(계속) 가. 경찰청
– 현안보고
– 질의 및 답변 |
|---|

<제2차 정보위원회 회의 예정>

– 2019. 4. 3. (수) 10:00 / 정보위원회 회의실 (본청 647호실)

- | |
|---|
| – 안건 1. 업무보고(계속)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통일부 다. 법무부 라. 해양경찰청 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바. 국방정보본부 사. 사이버전사령부 아. 육군 자. 해군 차. 공군 카. 합참민군작전부 타. 한미연합사령부 |
|---|

○ 간첩조작 및 댓글조작 등 국정원 관련 재판 동향

-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3. 14.)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전 국정원 간부들 기소 (3. 18.)
-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실형 확정 (4. 9.)
- 국정원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5. 30.)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前 기무사)

○ 방위사업청,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함

- 방위사업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
- 추가적으로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

- **기타 관련기사 주요 내용**
- ‘MB때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실형 3년 선고 (2. 19.)
 - MB 기무사, 노무현·문재인·이해찬·유시민 “좌파 체계도” 작성 (2. 19.)
 -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불법 감청 (4. 15.)
 - 기무사, 2014년 지방선거 승리 위해 세월호 유가족 감시 (4. 15.)
 - MB 청와대 비서관 2명, 기무사와 공모 정치 관여 (4. 15.)
 - MB 청와대, 기무사 방문해 ‘여론조작’ 독려 (4. 24.)
 - 옛 기무사, 세월호 수색 한창일 때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문건 작성 (5. 20.)
 - 기무사, 촛불집회 엮어서 간첩 사건 기획(6. 16.)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자유한국당, 당내 사개특위 별도로 구성 계획 국회에 전달 (3. 4.)**
- 자유한국당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전달
 - 권성동(위원장)·김도읍·주광덕·이주영(고문)·주호영(고문)·이만희·전희경·윤한홍·곽상도·윤상직·이장우·이철규·정종섭·정태욱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 검경소위 회의 (3. 5.): 특별한 결론 내지 못함 (자유한국당, “당내 사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
 - 사개특위 구성 변경: 이상민 위원장 선임 / 자유한국당 함진규 사임, 이장우 보임
 - 전체회의 (3. 13.): 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외 4건 소위 회부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4. 3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

○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6. 28.)**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8. 31. 까지 연장
-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民主司法

[권력기관개혁 중간평가 ①]

검찰 개혁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관련

서희원 변호사

I. 각 위원회의 구성 등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하여 검찰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를 이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17. 7. 임기를 시작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된 고검장·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부 소속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가 맡을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등 법무부 탈검찰화의 첫 걸음을 떤데, 임기 중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법무·검찰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는 목적 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2017. 8. 9.).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기존의 정부부처 내 설치된 개혁위원회가 내부 인사의 참여로 인해 “개혁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조직 내부의 시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

다는 취지였다. 위원 (법조인 5명, 법학자 6명, 시민사회 3명, 언론인 2명, 총 17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한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남준(변호사), 김두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변호사), 박근용(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변호사),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진(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변호사), 전지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변호사), 황상진(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법무부는 장관 직속의 법무·검찰개혁단(단장 1명, 검사 2명)을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 6. 21. 제14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법무부에 이어 대검찰청도 2017. 9. 19.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대검찰청 차장검사·기획조정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송두환(변호사), 위원 김성룡(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형(변호사), 김용민(변호사), 김용직(변호사), 김종민(변호사), 김한규(변호사), 박준영(변호사), 우양태(변호사),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용현(기자), 최원규(기자), 봉욱(대검 차장검사), 차경환(검사), 문찬석(검사)

검찰개혁위원회는 내부에 검찰과거사 TF, 검찰인사제도 TF, 검찰조직구조 개선 TF를 두었고, 2018. 9. 5. 까지 총 16회에 걸쳐 검찰개혁의 중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II. 권고취지 및 이행현황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① 법무부의 탈검찰화 (2017. 8. 24)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 (2018. 인사 시기 이전까지) ▶ 대변인·법무심의관·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 (2018. 인사 시기까지) ▶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 (2019. 인사 시기까지)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17. 8. 1.) ▷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및 14개 평검사 직위에 非검사 임용 완료 (2018. 12. 기준)

② 공수처 설치 (2017. 9. 18)	
권고내용	▶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한 기구로 공수처 설치
이행현황	▷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안 마련 및 발표 (2017. 10. 15.)

③ 검찰 과거사 위원회 설치 (2017. 9. 29)	
권고내용	▶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이행현황	▷ 검찰 과거사 위원회 (2017. 12. 12.) 및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족 (2018.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 대상사건 15건 선정 후 조사 진행 ▷ 외압논란 제기 및 김학의 성 접대 의혹·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활동 기한 연장 (2019. 5. 31. 까지)
--	---

④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2017. 9. 29)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 청구 ▶ 재심에서 무죄판결 확정시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법률적 조력 등 실질적 도움 제공 ▶ 임은정 검사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취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및 지휘권 오남용 여부 확인 조치 ▶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 제정 및 운용 (이의제기 처리절차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등 포함)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 공안부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 설치, 과거 인권침해 사건 및 긴급조치위반 사건 직권 재심청구 및 무죄 구형 ▷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18호) 제정 및 시행 (2018. 1.) ▷ 임은정 검사에 대한 재징계 포기 및 보수 보전 조치

⑤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 (2017. 12. 7.)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변호인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 금지, 피의자등 수사기관 출석시 관련 사항 기재 후 수사기록 편철, 심야조사 금지,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별개 사건 또는 타인 사건 통한 압박수사 금지 등)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발령 (2018. 5. 10.)

⑥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2017. 12. 7.)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인권적 범죄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조치 마련 (반인권적 범죄

	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소송수행자들 대상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있어서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의 주장 자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수행 매뉴얼 발간·배포 및 상소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상소 자제를 지시 (2018. 1.) ▷ 향후 소멸시효 근거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에 있어 법무부가 객관적·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

㉚ 검찰 내 성폭력 관련 (2018. 1. 31.)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2018. 2. 13. ~ 8. 13.)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실시 결과발표 ▷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하여 6차례 권고안 발표

㉛ 검·경 수사권 조정 (2018. 2. 8.)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와 사경의 상호 협력관계 규정 ▶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 원칙적 폐지 ▶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의 마련 및 시행 ▶ 검사의 구체적 수사요구권 명시 ▶ 검사의 수사종결권·기소여부결정권·영장심사권 유지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통제로서 사법경찰관 이의제기 가능) ▶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 한정
이행현황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2018. 6. 21.)

㉑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2018. 4. 5.)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의 관행 시정 ▶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검사에 대한 인사 운영 ▶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 관련 그간 지적되어온 문제 시정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한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정 / 검찰청법, 검사복무평정규칙 등 개정 ▷ 검사 복무평정제도 개선 ▷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평검사 경향교류 강화 등) ▷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 검찰 인사검증 강화

㉒ 법무 검찰의 성평등 증진 (2018. 5. 2.)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균형 인사의 실현 ▶ 근무평정 기준의 재정비 등 ▶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 ▶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 ·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 양성평등담당관 신설 (2018. 5.) ▷ 법무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공식 출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 2. 22.)

㉓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 (2018. 5. 4.)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 계속 필요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 파견하는 것을 중단 ▶ 타기관 파견은 검사의 본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밝히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 검사 파견 요건 엄격 심사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고려) ▷ 2018.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파견 검사 6명 감축

12 공안기능의 재조정 (2018. 6. 21.)	
권고내용	▶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에서 분리 ▶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
이행현황	▷ 검찰 공안부, ‘공공수사부’(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구성)로 명칭 변경

13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2018. 6. 21.)	
권고내용	▶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하는 방안 검토 ▶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이행현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8. 12. 24.) ▷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 (2018. 12.)

14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2018. 6. 21.)	
권고내용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또는 ‘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 침해’로 재구성 ▶ 각종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하여 재정비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이행현황	▷ 디지털 성범죄, 권력 이용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발의

2. 검찰개혁위원회

1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 및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2017. 10. 30.)	
권고내용	▶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이행 ▶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실효적 운영
이행현황	▷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설치

	▷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검찰총장 직접 사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	--

②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시행 (2017. 10. 30.)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조력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의 승인 없이 조언 ·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 자리에 앉아 조언 · 변호인 및 피의자의 간략한 수기 메모 허용 · 변호인에게 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장소 사전 통지 등
이행현황	▷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개정 (2017. 12. 4.)

③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화 및 이의제기 절차의 구체화 (2017. 11. 27.)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검찰청의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지시 기록화 ▶ 대검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지시 기록화 ▶ 검찰청법 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구체화 방안 마련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이의제기 등 관련 지침 시행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④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및 보존기간 연장 (2017. 11. 27.)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기록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쌍방 진술 및 제출자료 열람등사 허용하도록 특칙을 신설할 것 · 불기소사건의 경우, 열람등사 신청인이 참여한 대질조사의 내용, 상대방 진술(동의를 전제), 비진술서류(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 ▶ 형사기록 보존기간의 연장 및 전자문서 형태 등 기록 보존방법 다양화 ▶ 형사기록 공개 업무를 인권친화적으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의견서 등 중요서류는 피고인, 변호인용 부분을 함께 제출 ·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시 대검 예규에 따라 검찰직원이 기록을 직접 등사하여 법원에 송부

이행현황	▷ 형사기록 공개 TF 발족,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기록공개법 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
-------------	---

⑤ 형사상고·직권재심 관련 공익적 검찰권 행사 (2017. 12. 26.)	
권고내용	▶ 전국 고·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검찰 직권 재심청구의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 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 및 시행
이행현황	▷ 형사 상고심의위원회 설치 ▷ 직권재심 청구 ▷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시행

⑥ 재정신청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 (2017. 12. 26.)	
권고내용	▶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되, 고발인의 경우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 (단, 형법 제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경우, 이해관계 없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이행현황	▷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등 관련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에 건의

⑦ 검찰 내 성폭력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2018. 1. 31.)	
권고내용	▶ 검찰이 구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사실 등을 전수조사 ▶ 검찰 내 상설 전담기구 설치
이행현황	▷ 진상조사단 수사 실시 ▷ 대검찰청 양성평등담당관 설치 ▷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 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제정·시행

⑧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 (2018. 2. 7.)	
권고내용	▶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통해 관련자의 신분

	<p>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채용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안 모 검사가 이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가 2017. 11. 27. 권고한 제3차 권고안의 ‘검찰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및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이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방안 (2018. 3. 5.)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제정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반드시 서면화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는 대검찰청을 경유하도록 할 것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지침 전면 개정 추진 ▷ 대검 보고매뉴얼 마련

㉒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의 폐지 (2018. 4. 5.)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장급 검사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원 등 차관급 예우 폐지 ▶ 검사장급 검사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도록 조정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차량 제공 예우 폐지 ▷ 검사장급 검사 인원 6명 축소

㉓ 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 (2018. 4. 23.)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에 성평등·인권담당관 신설 ▶ 전국 5개 지검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인권보호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 ▶ 주요보직 인사, 수사, 조직운영에 성평등 실현 ▶ 평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의 구성과 활동의 보장 ▶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다면평가·감찰 등을 통해 파악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을 당사자에게 통보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 양성평등담당관실 설치 ▷ 의사소통 활성화 및 의사결정 합리화 TF 운영
-------------	---

12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개혁위원회의 입장 표명 (2018. 7. 3.)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내재된 영역 이므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 ▶ 기타 검찰의 수사지휘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관련 입장 표명

13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 (2018. 8. 13.)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임명절차 개선 ▶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 복무평정 등 관련 개선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인사규정 법제회 (2018. 12. 18. 공포·시행) ▷ 검사징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3. 28. , 4월 중 공포·시행 예정)

14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2018. 9. 13.)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아동학대, 여성, 다문화·외국인 사건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권보호 강화 방안 수립 및 시행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 인권부 설치 ▷ 심야조사 실태조사 및 최소화 방안 시범 실시

15 검찰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 (2018. 9. 13.)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조직 구조 개혁 방안 수립 및 시행 ▶ 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시행 ▶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 정책기능 강화 ▷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

㉞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권고	
권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참조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 및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에게 사과
이행현황	▷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비상상고 신청 (2018. 11. 20.)

Ⅲ. 평가 및 제언

1.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채 한 달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내 독자적인 개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자 두 위원회가 주체만 다를 뿐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개혁위가 내용을 개혁안에 대비하여 검찰의 방어 논리 개발을 위한 것이거나, 법무부와 의 힘겨루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과제에 부정적인 검찰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법무부에서 제시하게 될 개혁 방안에 대하여 조직 보호의 논리만을 내놓는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법무·검찰의 근본적인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었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검찰 내부의 기술적인 개혁 측면에 집중되어 두 위원회 간 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충돌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목적의 두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검찰조직의 자기보호논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 각 권고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가. 법무부(검찰국 포함)의 탈검찰화

법무부와 검찰간의 유착을 근절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무부가 검찰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법무부 내 대부분의 주요 직책에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4조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상당수의 직책들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이 없음에도 승진을 앞둔 검사들의 순환·회전근무처로 소비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주요 보직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배제되고, 검찰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검찰 내부 비리와 부패에 대한 제식구감싸기 문제가 심화되었다. 법무부도 2004년 발간한 ‘법무부 정책목표와 과제 - 인권존중의 법질서’에서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등이 단기 순환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검찰 및 검사 중심의 법무부 운영은 결국 법무·검찰의 인적·기능적 중복으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¹⁾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1차 및 제13차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각 직제를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고 개정하고,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여 ‘법무부 탈검찰화’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하였다(2018. 12. 기준).

그러나 이는 검사의 법무부 보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온전한 의미의 ‘탈검찰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당장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발

1) 법무부 정책목표와 과제 - 인권존중의 법질서 112쪽, 119쪽 참조

생활 우려가 있더라도 직제 규정의 “또는 검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채나 일반 직 공무원 승진을 통해 비(非)검사 인력 충원의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해당 규정들을 복수직제로 남겨두어 언제든 다시 해당 직위에 검사가 보임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당시 위원회 내부 회의록에 “복수 직제로 남겨두는 경우 언제든 다시 검사로 보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외부공모 또는 일반직으로만 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기재된 것²⁾을 보더라도, 복수직제로 남겨두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위원회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무부는 올해 2월 법무심의관실 소속 기존 평검사 2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법무심의관실을 완전히 탈검찰화 하려 시도하였다가, 책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검사 2명을 다시 파견 받았다.³⁾ 법무부 검찰관도 외부 책임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 직제 규정은 법무부가 ‘책임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비검사 인력 충원에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언제든지 그 공석을 핑계로 다시 검사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개혁에 역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불가역적 개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겸직 검사의 수를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4조와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⁴⁾

또한 보다 장기적으로는 검찰청을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시켜 본연

2) 2017. 8. 16. 자 제2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논의 요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백서)

3) “거꾸로 가는 ‘탈검찰화’ … 검사 빠진 자리 다시 검사로” (2019. 3. 14. 자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481&kind=AD&key=>)

4) 관련하여 현재 20대 국회에는 세 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957,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536, 김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004668,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다.

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고유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법무부 검찰국은 폐지하거나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교정·인권 등의 영역과 인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통한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은 강화하는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⁵⁾

나.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남용을 막고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 또한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지속 추진되어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제2차 권고를 통하여 구체적 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및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외에도 강요, 공갈,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범죄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공소 및 이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불과 한 달 후(2017. 10. 15.) 법무부가 내놓은 자체 공수처 안은 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⁶⁾ 법무부의 안은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가 추천

5)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4쪽 참조

6)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2017. 10. 16.)

한 2인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후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회 권고안과 달리, 국회의장이 각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한 명을 선출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수를 축소하고 그 임기도 제한하였다. 수사대상도 대폭 조정되었다. 법무부 안은 검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공수처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관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공수처 도입의 취지 자체를 몰각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고위공직자’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밖에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장의 요청 없이도 검사가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생략되어있어 공수처의 수사우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등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후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기존 공수처 설치법안에 위와 같은 정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연말까지(2017년)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100일 남짓 남도록 공수처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국회법 제85조의2)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였다. 시민사회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같은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공수처 설치의 본래 목적을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⁷⁾ 2019. 4. 22.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공수처 법안을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논평]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2019. 3. 28.)

4. 29. 국회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4당 합의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공수처법안의 입법논의 시한을 정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에서의 논의절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 있어서만(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기소 대상으로 제외되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두 법안은 온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검찰 권력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를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수사처 검사의 임기제한을 두어 그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⁸⁾ 본래의 취지대로의 온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하여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7. 12. 12. 설치되었고, 2018. 2. 6.에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발족되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검찰권 오·남용 의혹사건이 제기된 17건의 대상사건(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를 발표하였

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입법의 시작일 뿐이다 (2019. 4. 30.)

다. 조사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스스로 지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점,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성과 운영과정에 있어 한계가 적지 않았다.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 및 촉구사항 중 검찰이 수용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조사대상인 전·현직 검사 중 일부가 조사단원에게 외압을 가하거나 위원과 조사단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조사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시간적 제약과 권한의 한계로 충분한 조사 결과 도출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대상의 선정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대상 사건 기록을 실제 검토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분리·운영되었고,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외부단원은 비상근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2019. 5. 31. 활동을 종료하였으나, 검찰이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검찰과거사위의 활동 평가를 통해 검찰의 철저한 과거사 정리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⁹⁾

라.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방안 권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내용에 따라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556호)을 개정·발령하였다.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에는 위원회에서 개정사항으로 논의되었던 내용 중 1)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체포·구속,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피의자 명예 존중, 3)피의자 소환 시 시간적 여유 부과 및 죄명 또는 피의사실 요지 고

9) [민변] [논평]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종료에 부쳐 -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2019. 6. 3.)

지, 4)피의자 면담 등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의 불허 또는 퇴거 요구 금지, 5)피의자가 출석하였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6)심야조사 건수 분기별 보고 의무화 및 조사 시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내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타건 압박 수사 또는 표적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은 위원회 권고 내용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내용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어떤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세워 다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보다 강력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내용이 실제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개정 준칙 시행 전후를 비교하는 면밀한 실태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밝혀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검찰 내 성폭력 해결·성평등 문화 증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관련 권고(2018. 1. 31. 자 제7차 권고) 이후, 법무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를 발족하였다. 이와 같이 법무부에 관련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대검찰청은 자체적으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같은 대검찰청의 결정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위로 하여금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직문화의 개선을 가져오겠다는 권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책위를 무력화하고 ‘셀프조사’를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법무부 대책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진상조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대검찰청의 별도 조사위원회 구성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후속 권고를 발표하였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부·검찰 내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직 내 성적 침해 행위 사건 처리를 위한 감찰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경우라도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2018. 5. 31.)을 이끌어내는 등 제도 개선에 있어서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바.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기준이 모호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 범죄로 한정한다고 하였으나, 국민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수의 재산범죄가 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권고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수사권 조정 시 검찰은 사건의 성격 및 내용과 무관하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수사의 총량 통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

움에도, 위원회는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의 문제를 “수사권 조정 차원이 아니라 전체 형사법 체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증거법의 문제”로 보고 해당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2018. 6. 21.) 또한 검경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고,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루어졌던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래된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첫 발을 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되지 않고 동일하게 발견되었다.¹⁰⁾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논의의 장이 이동되었다. 사개특위 산하 검·경소위원회는 그간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놓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였고, 2019. 4. 22. 여야 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야 4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릴 법안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4. 29. 국회 사개특위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4당 합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당 법률안은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정부 합의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검사에게 부여된 1차적 직접수사의 범위가 여전히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는 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현행법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향후 안건심사 과정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¹⁾

10) [민변] [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2018. 6. 22.)

사. 검사 인사제도 개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검사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관급 대우를 하는 등 사실상 ‘검사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오던 것을 시정하여, 검찰총장 - 검사장 - 차장 검사 - 부장검사 - 평검사로 이어지는 조직 내 서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파견검사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검사 6명이 감축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각 부처의 ‘법률자문’ 형태로 검사가 파견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률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곳으로, 파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파견검사 제도는 검찰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해당 부처 행정에 검찰의 입김을 작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만큼, 수사나 감사 등 특화 업무 담당 인원만 남기고 전원 복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 공안기능의 재조정

검찰 공안부는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의 범주를 넘어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으로 그 담당 범위를 확대해왔다. 동향파악과 정보보고, 정부 유관 기관 간 업무조정 등을 담당하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현재 검찰 공안부가

11) [민변] [논평]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2019. 5. 16.)

처리하는 사건의 89.22% (2017년 기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인데, 이와 같이 노동사건을 ‘공안의 시각’으로 처리하는 검찰의 관례는 노동자에게는 엄격하고 사용자에게는 미온적인 불공정한 법집행을 낳았다. 무엇보다 공안부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활용되어왔다는 오명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고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선거 분야의 분리) 2) 공안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3) 노동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대 기류에 가로막힌 법무부는 이렇다 할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단지 그 명칭이 ‘공안부’에서 ‘공익부’로 변경되었을 뿐, 권고 취지대로의 개혁의 이행은 요원하다.¹²⁾ 본래의 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현재 검찰 조직에서 사용되는 공안의 개념을 축소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안부를 폐지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¹³⁾

자.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및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에서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대검찰청은 2017. 8.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한 것을 시작으로, 과거사 사건에 관한

12) “검찰 공안부, 우여곡절 끝에 ‘공공수사부’로 바꾸기로” (2019. 1. 17. 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750.html)

13)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0쪽

‘재심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 소멸시효 규정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¹⁴⁾ 당해 결정 이후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민사 재심사건¹⁵⁾에서 검찰은 국가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다. 이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검찰이 스스로 발표한 권고 이행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과거사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검찰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유사 재판들에서도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⁶⁾

차. 수사 적정성 확보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검찰개혁위원회의 2차 권고에 따라, 대검찰청은 검찰의 피의자신문 도중에라도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내용에 관해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2017. 12. 4.), 시행 지시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였다. 2018. 7. 17. 재차 개정된 지침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메모를 허용하였다. 또한 구금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에게 신문 장소와 일시 통지하도록 하고, 구속영장발부 여부도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14)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등

15) 서울고등법원 2018재나20217 판결

16) [민변] [공동논평]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들의 민사 재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소하라! (2019. 4. 24.)

또한 권고 내용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915호)을 제정, 시행하였다(2018. 1. 2.). 지침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및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설치된 이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기소 의견을 내는 등¹⁷⁾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두고서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단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단순히 검찰개혁 요구를 면피하기 위한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카.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 수립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으나,¹⁸⁾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이 완비되지 않아 실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958호)과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등 기록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917호)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임은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권고(2017. 9. 29.)하며 제시한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등에 관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17)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성추행·인사보복 혐의...안태근 구속 기소 의견” (2018. 4. 13. 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4/237947/>)

18)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②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기관장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등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의제기 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 이러한 정도의 절차규정만으로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및 보존 기간 연장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을 기하기 위해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이나, 당사자 간의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상호 공격 및 방어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록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검찰개혁위원회도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특칙을 신설하여 공소제기 전 형사기록과 불기소처분 된 사건 기록의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불기소처분 된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고소사건은 특칙을 두어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쌍방의 진술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최대 50년으로 늘어난 점, 재심청구 등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 수사 및 재판기록의 재검토할 필요성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의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권고사항을 반영한 입법개선을 건의(2018. 4.)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대로의 관련 법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파. 재정신청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제도 도입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의 재정신청 제도 확대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현행 형소법은 고발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로 한정하고 있어, 이외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개혁위원회는 1)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고, 2)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을 대상으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⁹⁾ 더 나아가 검찰항고제도는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 특성상 스스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임의적인 절차로 변경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는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사가 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악이 된 역사가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재정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수사와 기소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폐기하였다.) 검찰이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당초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부서에 사건을 다시 배정하거나, 구형을 아예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취지에 부합하도록 이해관계를 가진 고발인에 한하여 혐의를 불문하고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직무관련 혐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고발인이라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며, 공소유지변호사제도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992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 12. 11.)

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송부하였다(2018. 10.).²⁰⁾ 해당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권고를 발표하였다(제8차·제11차 권고).

제8차 권고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서면화하며,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는 대검찰청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사무보고 대상 사건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검 기획조정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일선청 및 대검 각부서 의견을 취합하였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하도록 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는 대검을 경유하도록 하는 권고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2018. 3.) 권고의 일부 내용에 따른 제도 개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등‘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지 않

20) “검찰 ”불기소사건, 법원 전면통제 받겠다“ ... 재정신청 확대 추진” (2019. 5. 16. 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1744/>)

는 이와 같은 규정의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밖에 제11차 권고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개선(검찰청법 제34조의2의 개정)하고, 검사의 임용, 전보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고,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검찰청법 제35조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률개정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총장 임명 및 검사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 검찰 조직문화 개선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행정업무와 준사법적 업무의 기능상 분리(대검찰청의 정책기능 강화 및 개별사건 처리에 대한 일선 청의 자율성 확대)·법무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의 업무 중복 해소, 감찰 기능의 실질화 등을 통한 조직구조 개혁을 주문하였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등은 그 업무 범위가 일선청의 업무와 그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일선청의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검찰청 조직의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개선안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말 진행되었던 감사원 감사(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는 등 정원(560명)보다 16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규조직 외 8개 임시조직(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특별감찰단, 검찰개혁추진단, 양성평등담당관실 등)을 운영해왔으며, 이 중 3개 조직은 최대존속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의 경우 지난해 대검찰청의 정규

조직화 요구를 행정안전부가 기존 부서 업무와의 중복 등 사유로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운영할 만큼, 대검찰청 내의 중복 업무 수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이와 같이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조직의 상설화’ 문제의 해결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활성화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이미 2010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의 ‘거수기’로 전략하지 않고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 업무의 중복 및 낭비를 초래하고 검사직급·직위의 지나친 서열화에 기여한 고등검찰제도를 폐지하고 직급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 더욱 전향적인 조직문화 개선 과제도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어

현재 상황에서 평가할 때 위 각 위원회를 통한 개혁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위 두 위원회는 집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하는 자문기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권고한 내용을 집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집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수처안을 법무부 내부 TF에서 수정하여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권고안들이 권고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자율적, 상향식 개혁 방식을 택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위 두 기관이 모두 활동을 종료하

21) “감사원 ”대검찰청, 존속기간 경과한 ‘임시조직’ 상설화 운영“ (2018. 11. 29. 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909433298626>

였고, 그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권력기관의 자율적인 이행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집행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임이 자명하다. 이점에 있어서도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였던 것인데 당초에 로드맵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 아쉬운 부분이다. **民主司法**

[권력기관개혁 중간평가 ②]

경찰 개혁

- 경찰개혁위원회 관련

오민에 변호사

I. 경찰개혁위원회 개요

2017. 6. 16. 위원장 및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가 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① 인권보호, ② 자치경찰, ③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정보경찰개혁, 경찰대학 개혁)의 경우 특별소위를 구성하였고, 분과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
|---|
| ① 인권보호분과: 인권위 권고사안을 분석·재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집회 관리·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 권고안 15건 |
| ② 자치경찰분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모델) 연구 및 검토,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 권고안 1건 |
| ③ 수사개혁분과: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경찰 수사 신뢰 제고방안 마련 → 권고안 12건 |

전체회의 28회, 분과 및 소위 회의 119회를 거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제/경찰위원회 실질화/집회시위 자유 보장/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권고안 30건을 의결·발표하였다.

구성 1년만인 2018. 6. 15. 해단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019. 6. 기준).

II.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 및 이행현황

○ [인권보호]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고 ('17. 7. 14.)

-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유사사건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청에 둔다.
- 진상조사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민간조사관들과 경찰조사관들을 두고, 경찰청 및 산하 경찰관서들, 그 소속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한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청은 이를 존중한다.

[계획]

- 8월 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근거(훈령) 마련
- 8월 限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위원장·위원 선임)

[이행현황]

-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진상조사 진행 대상 사건 및 권고안 발표: 故 백남기 농민사망사건(2018. 8. 21. 발표),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2018. 8. 28. 발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 염호석 장례식(2019. 5. 14. 발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2019. 5. 29. 발표), KBS 강제진압, 용산 화재참사, 밀양 송전탑 건설

○ [수사개혁]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17. 7. 14.)

-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① 조사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보하는 등 조사기일을 미리 변호인과 협의, ② 의뢰인 옆에 좌석을 마련하는 등 변호인을 충분히 배려, ③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조언·상담할 수 있도록 소통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기록, ④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조사내용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사관의 위법·부당한 수사나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변호인의 발언권을 보장, 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의견 또는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 ⑥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 ⑦ 이상의 사항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혐의자·참고인 등 모든 조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법령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이를 반영한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

- 경찰은 유관기관, 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계획]

- 7월限 권고안을 반영한 실무지침 마련 후, 수사분과 사전검토
- 8월限 실무지침에 대한 해설자료 마련 후, 서울청 사전 교육
- 9.1.부터 서울청에 限하여 3개월간 실무지침 시범실시
- 12월限 시범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 수정·보완 후, '18.1.1.부터 전국 시행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이행현황]

- 변호인 접견·참여 규칙 개정(2018. 8.)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관련 논의 중

○ [수사개혁]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 도입 ('17. 7. 14.)

- 경찰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정 영상녹화 실시함에 있어 **의무적 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한다.**
-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를 도입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영상녹화, 진술녹음은 조사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작·왜곡의 가능성이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녹음·녹화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계획]

- 10월限 필수적인 영상녹화 범위 확대 방안 마련·시행
- '17년 內 진술녹음제 시범운영 실시
- '18년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이행현황]

- ① 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 ② 살인, 성폭력, 중수죄, 선거범죄 외에도 강도·마약·경제범죄(5억원이상) 등 피의자 조사의 경우에도 의무녹화 대상 확대
- 진술녹음제의 경우 시범운영 실시

○ [수사개혁]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 ('17. 7. 14.)

- 장기간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내사·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사건을 종결한다.
- 내사·수사에 착수한 후 일정 기간(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이 경과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계획]

- 9월限 장기사건 전수 조사 등 현장점검 실시
 - ※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9월限 종결 처리
- '17년 內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 추진방안 마련·시행

[이행현황]

- 범죄수사규칙, 경찰내사처리규칙 개정. 2018. 1. 2.부터 인지사건 일몰제 시행

○ [인권보호]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백서 발간 권고 ('17. 7. 28.)

-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2017년 4월 29일 23차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집회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한다.
-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그리고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 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백서에 포함한다.
-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비교해서 백서에 첨부한다.

[계획]

- 8월 限 경찰청 내 백서발간 T/F 구성
- 1년 內 백서발간 완료

[이행현황]

- 백서발간 TF 구성, 2018. 4. 백서 초안 마련. 수정안 작성 중.

○ [수사개혁]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17. 7. 27.)

- 경찰 수사절차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준하는 경찰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시행, ② 서면수사지휘 원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책임 부과, 非서면지휘의 무효 원칙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행력 확보, ③ 상급자의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향후 '외부 독립기구'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④ 수사담당자 뿐 아니라 수사지휘자 등 모든 수사관여자들의 '실명'과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사서류인 '의견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사후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한다.
-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직무방해죄(가칭)'를 도입하고, "친절하게 조사해 달라"는 등 사소한 청탁까지도 필요적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계획]

없음

[이행현황]

- 2018. 1. 2.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시행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 시행(2018. 12.)

○ [인권보호]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17. 9. 1.)

- **집회·시위 ‘관리’, ‘대응’에서 집회·시위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 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옹호할 책임, ②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경우에 신고 및 진행 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에 대해서는 경찰력 행사를 절제
- **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 집회·시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며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
- **금지(제한)통고 및 조건통보 최소화 기준 마련**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공개
-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 : ① 살수차는 집회·시위현장에서 사용 금지, ② 차벽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③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의 차벽설치 및 경찰 인력배치 금지, ④ 질서유지선 설정 전에 집회·시위 주최 측과 사전 협의하는 등의 절차 마련, ⑤ 채증은 긴급한 경우 수사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
-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산절차 개선** : 해산명령에 앞서 종결선언요청과 자진해산요청을 하도록 하고 강제해산 요건 및 방식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 **기타** : ①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소속과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부착, ② 1인시위,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부당한 관여 금지, ③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원칙 수립, ④ 평화적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원칙에 어긋나는 각종 평가기준은 삭제하거나 반영비율 재조정, 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선 통신내용 보관, ⑥ 집회·시위 참가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경우 DNA 채취 금지, ⑦ 교통CCTV는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교통 관리용으로만 활용하고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 또는 개인 식별용으로 사용 금지, ⑧ 집회·시위시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과 방식을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⑨ 경찰청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보장 방안을 구체화해서 실행
- 이상을 위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한다.

[계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대상 : 집회신고 예외규정, 변경신고절차 등
- 11월限 집시법 개정 관련 세미나 등 개최
- 12월限 집시법 개정법률안 초안 마련
- ‘18년 상반기限 집시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추진
- ‘18년 온라인신고 시스템개발 예산편성 추진 / ‘19년 시스템 구축·시행

<집회 시위 대응 관련 기준 수립 등>

- 10월限 시민사회단체 등과 기준수립 관련 논의 추진
※ 금지·제한통고 기준, 변형 1인시위 적용 원칙 등
- 11월限 논의결과를 반영, 집회시위 대응 기준 수립·시행

- 12월限 일선 교육자료 정리 및 순회교육 진행
- <집회시위 대응 전반>
 - 9월限 '법률 및 판례 교육자료' 제작·배포
 - 10월限 '집회시위 대응방안' 작성·배포
 - 10월限 '선진외국 집회시위 대응방안' 제작·배포
- <살수차 관련>
 - 12월限 살수차 사용요건 규정 등 법령* 개정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12월限 대통령령을 반영한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
- <차벽 관련>
 - 11월限 '차벽 운용지침' 개정
- <무전녹음 관련>
 - 11월限 '경찰 지휘 무전녹음 관리규칙' 제정·시행

[이행현황]

- 총 52개의 과제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행계획 수립 중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의 개정안 논의 중

○ [수사개혁]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 ('17. 9. 8.)

- 경찰의 인권침해 및 경찰의 직무상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통제 기구의 신설**을 추진한다.
-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 모델을 기반으로 시민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전담하는 가칭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또는 '경찰인권·감찰위원회' 설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안)**은 **독입제 방식**의 시민참여가 반영된 독립된 기구로, ① 경찰권 행사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조사와 경찰관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권고, ② 경찰권의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현장방문조사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 ③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조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범 죄행위를 인지한 경우 형사고발 또는 수사권을 행사한다.
- **경찰인권·감찰위원회(안)**은 **독립위원회 방식**으로,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안)의 업무 범위 및 권한에 더하여 경찰권 행사 대상이 제기하는 민원조사 및 경찰관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한다.

[계획]

- '17. 12월限 각국의 경찰권 통제방안에 대한 시사점 연구, 현재 경찰권 행사 통제 기구의 운용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시민 참여가 반영된 독립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방안 마련
- ※ 관계부처와 협의 병행

[이행현황]

- 외부 통제기구 근거 법률안의 초안 마련, 연구 용역 진행

- 별도 기구 신설의 어려움 확인.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맨 기능 활성화 추진

○ [수사개혁]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마련 ('17. 9. 8.)

- 긴급체포 제도 관련 : ① 긴급체포 제도의 운영이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원·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후 체포영장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② 긴급체포 시에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 승인없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더불어 모든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
- 영장을 통한 수사상 강제처분 관련 : ① 영장 신청시 팀장, 과장의 이중적 심사를 거쳐 영장신청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을 분석, 검토하여 업무상 과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② 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별도의 전담인력(가칭 '영장전담관')을 두는 등 신중하게 영장 청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 구속 제도 관련 : ① 현재의 최장 30일에 이르는 공소 제기 전 구금기간을 최장 20일 이내로 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즉시 구치소에 구금, ② 경찰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구치소에 출장조사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 ③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단 기일 내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계획]

- '17. 10월限 내부 시행 가능과제 추진계획 수립하고, 11월부터 시범운영 실시
 - ① 긴급체포 사전승인·사후점검 추진계획
 - ② 영장 신청여부 결재 단계 격상 및 영장미발부 사안 분석 등 추진계획
 - ③ 경찰 구속 피의자 송치기간 7일 이내 단축 및 신속 송치 추진계획
- '17. 11월限 법률개정 및 관련기관 협의사안에 대해 개정안 마련 등 준비 후 입법 내지 협의 추진
 - ① 긴급체포 관련 사후 체포영장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 ② 수사기관 구속을 법원 구속으로 변경, 기소 전 구금기간 축소 (現30→後20), 구속영장 발부 즉시 구치소 수감<형사소송법 개정>
- '17. 12월限 개헌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한 '영장전담관' 신설 등 영장업무 운영 방안 수립

[이행현황]

- 각 지방청의 위임전결 규칙 통일,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과장결재로 신청하도록 결재권자 격상(2018. 4.)
- 영장심사관 시범운영(2018. 3.)
- 구속피의자 신속히 수사완료 후 송치, 구금기간 최대 단축 지시(2018. 6.)
- 긴급체포 사전승인, 구속제도 개선 관련 권고사항은 이행되지 않음.

○ [수사개혁]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17. 9. 22.)

-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 수사 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인 보호는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해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강한 유치관리 부서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 유치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치인과 가족·친지와 접견교통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외국인, 여성, 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유치인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유치인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 주변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구하고 유치담당자가 일정 수준의 보건 의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치인에 대한 급식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적당하고 영양과 위생을 고려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 유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유치장 내에서의 질서, 위규 시 징벌 등은 교정시설과의 차이를 감안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87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전국적으로 유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그 중에서도 유치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시설은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의 각 권고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한 세부지침을 시행한다.

[계획]

- 법규 제·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지침 등을 정하여 시행
- 2018년 6월말까지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훈령 등의 제·개정 작업 추진
- 조직신설·인력증원, 화장실·변호인 접견실 등의 예산확보, 의료교육 체계마련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신속하게 협의

[이행현황]

-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방안(2018. 2. 20.),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2018. 4. 27.) 각 시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2018. 8. 13.)
- 유치 관리부서 편제개선, 질서·징벌규정에 대해서는 논의 중

○ [수사개혁]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17. 9. 22.)

- ① 수사부서 사무환경은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조사공간은 피조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개별 조사실로 설치, ② 일부 조사실은 성폭력·가정폭력,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2차 피해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 설치, ③ 의무적 영상녹화 조사대상의 범위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에 맞추어 영상녹화실을 부서별로 충분히 설치하고, 보안성이 검증된 진술녹음 시스템도 구축, ④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권고 등 향후 경찰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를 위해 변호인 접견

실을 충분히 설치, ⑤ 설계기준이 실제 운영에서도 퇴색되지 않도록 개선된 사무환경 하에서의 구체적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에 내용 반영하여 인권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현재 경찰청 내부지침인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을 예규로 제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위 기준은 신축관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그 외 모든 관서는 단계적인 개선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수사부서 사무실에 위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계획]

- '17. 12월限, 개선된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 마련
- '17. 12월限, 개선 사무공간 활용을 위한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관서 수사업무지침' 마련
- '18년,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사업' 시행(수사, 여청수사, 교통사고조사)
- '18년, 연차 계획 수립, 5년 內 개선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

[이행현황]

-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사업', '영상녹화실 신규 설치사업' 추진
-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 시행(2018. 3. 12.)

○ [인권보호]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17. 10. 11.)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 : ① 국가인권위원회 및 UN 인권조약 감독기구에 의한 각종 권고에 대해 전향적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불수용) 결정에 대하여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검토, ② 위 각종 권고 중 고질·반복적 침해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직무교육에 포함하는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인권기준을 마련·보급, ③ 재발방지 대책 시행 전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 계획의 타당성·적합성 심의,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와 이를 통한 개선 노력 등을 경찰청장 평가에 반영
- **경찰을 인권 친화적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모든 경찰행정의 기준을 국민의 인권증진에 들 것** : ① 경찰조직의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장할 전담부서로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되 책임자는 외부 전문가로 채용, ② 인권정책관은 경찰의 전 부서에서 인권친화적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 이행
-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 : ① 국민의 인권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훈령, 예규 및 주요 정책의 시행에 대해 사전 평가 방식으로 실시, ② 경찰위원회 심의 대상인 법령과 보고대상인 정책 중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그 실행을 의무화, ③ 체크리스트에 의한 의뢰부서의 자체점검과 평가지표에 따른 인권정책관의 검토의견서 작성,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의견을 소관 기능으로 통보하여 최종 정책에 반영, ④ 평가방식을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집단의 평가로 다원화하고 이를 위한 평가체계를 완비, ⑤ 2017년 내에 제도적 근거를 완비하고 2018년 상반기 인사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인권전문가를 확충, ⑥ 평가를 거쳐 시행된 법령과 치안정책에 대해서는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

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시행중인 법령과 정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형 인권영향평가를 병행, ⑦ 경찰관서 건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청사의 신·개축시 반영

- **경찰관 인권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과 직책에 맞는 인권교육을 개발하여 모든 경찰관이 필수적으로 이를 이수하도록 할 것 : ①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신설, 3년 단위의 중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인권 지향적으로 재편하며, 다양한 인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시적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정비, ②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찰관들의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권역량 강화 학습 유도, ③ 일회성 교육, 형식적 집체교육, 50인 이상의 소집교육, 교대근무 직후에 이루어지는 무리한 주입식교육, 상급자의 직무지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교육을 지양, ④ 모든 경찰관들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계급별, 직책별, 과정별 차별화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교대근무 경찰관의 업무환경과 직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⑤ 경찰관 채용시험에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배정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 헌법교육을 포함

[계획]

- 10월 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안 마련 인권영향평가의 근거조항 신설
- 11월 중 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 12월 중 경찰인권교육개혁 3개년 계획 발표
- 12월 중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연구 결과 도출
- 12월 중 인권영향평가제, 인권교육 전담 실무자 현원발령
- '18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 '18년 상반기, 인권정책관 신설(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전담부서 신설 포함)을 위한 실무협의, 소요 정원안 제출

[이행현황]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규칙'으로 개정(2018. 4.), 인권영향평가 시행(2018. 6.)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751건 중 불수용 108건 재검토, 86건 수용.
- '제1차 경찰 인권교육 기본계획(2018-2020) 수립
- '현장인권상담센터' 신설(2018.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경찰서 상주

○ [인권보호]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17. 10. 11.)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고,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및 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인 소속기관에 둔다.
- 경찰관의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
- 직장협의회 관련법이 통과,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등이 가능하도록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소통기구(가칭

‘경찰관협의회’)를 즉시 운용한다.

- 법률상 직장협의회 가입 제외 대상인 수사경찰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의사소통기구를 만든다.
- 향후 경찰관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위 권고 수용을 위해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TFT’를 설치한다.

[계획]

- 11월限 경찰청 내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TFT’ 구성
- 10월~12월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행안위 의원 등과 협의·설명(행안부, 유관부처 공동)
- 12월限 관계 부처(행안부·소방·해경)간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범위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12월限 법 개정안 국회의결 추진

[이행현황]

- 매달 경찰서별 ‘현장활력회의’ 개최(2018. 2.-)
-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 TFT 설치(2017. 11.),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관련)

○ [인권보호]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방안 ('17. 10. 11.)

- **성별 분리 모집 관행을폐지 및 2020년부터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 실시** : ①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기준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되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 ②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 비율은 우선 폐지, ③ 성별 통합 모집 시행 전까지 전체 여성경찰 비율 및 연도별 증원목표를 마련하여 채용에 반영하고, 이를 경찰개혁위원회 또는 향후 구성될 성평등위원회에 보고·의결하여 실시
- **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적극적 조치 실시** : ① 여성경찰의 하위직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까지 직급별·기능별 여성 비율이 전체 여성경찰 비율과 비례하도록 조치, ② 위 조치에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등을 포함, ③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 관련 결정과정에 여성경찰 참여를 의무화, ④ 매년 계급별·기능별·주요 보직에 대한 성별 통계를 발표하고 심사 승진의 여성 비율을 공개
-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근무여건 조성** : ① 각종 행사 및 의전의 안내, 사회, 시상 보조를 여성경찰에게 전담시키지 않으며, 행사 참여 시 여성경찰에게 치마제복 강요 금지, ② 여성경찰을 과도하게 홍보에 활용하거나 성차별적 이미지를 강조한 경찰홍보 금지, ③ 직무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각종 성과평가 항목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총경 이상 승진 심사 시 성인지도 평가 및 심사절차를 도입, ④ 각 관서별 여성경찰의 휴게, 탈의, 당직,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을 점검·보완, ⑤ 여성경찰의 집단적 의견 수렴 및 네트워킹을 제도적으로 보장, ⑥ 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여성경찰만의 폴리스라인 배치 금지

- **일·가정 양립 지원** : ① 출산휴가 등 활용에 대한 부정적 발언·태도를 삼가도록 하고,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경무인사기획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고, 경찰청장은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천명, ② 육아휴직자에 대한 전보인사를 금지하고 희망 보직제, 대체복무제 및 정원 확충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며, 경찰서 등 관서단위로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적극 확충, ③ 남성경찰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남성경찰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대기 근무 금지, 유연근무 활성화, 불규칙한 동원이나 부가업무를 줄이도록 대책을 마련, ④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질적 시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치안성과' 지표 반영 등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위한 전담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마련** : 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 ② 사건의 접수, 조사, 처벌, 사후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업무를 일원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며, 이를 위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담당관은 4급 상당의 개방직으로 채용, ③ 전담부서는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와의 재접촉 및 부적격 부서로의 배치를 예방, ④ 사건 예방 및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유출 및 유포 시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 ⑤ 여성-피해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피해자 중심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연 1회 이상 각 관서별 관리자(관서별 과장급 이상)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의무화
- **'성평등위원회' 구성** : ① 7인 이상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 중 1인을 공동 위촉, ② 성평등위원회 지원 등을 위해 성평등 담당부서를 구성하고, 정책추진 전문성 담보를 위해 담당관은 4급 상당의 개방직으로 채용하며, 경무인사기획관실 소속으로 부서 배치, ③ 성인지적 관점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 ④ 성평등 정책의 수립단계 및 추진과정에서 여성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 **'성평등위원회 및 총괄부서' 구성 전까지 성평등 관련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권고안 이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평등TFT' 즉각 구성**

[계획]

<채용정책>

- '18년 남녀 통합모집 관련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전향적으로 추진
 - * 연구용역시 국가인권위·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 진행, 연구결과에 따라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추진
 - * '성평등위원회'와 주기적인 연구 진행사항 공유를 통해 공신력 담보
- '18년 경대·간후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세부 체력기준 및 검정절차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19년 경대·간후 남녀 통합모집 실시
 - * 외국사례 분석 등 실무적인 내부 검토 즉시 추진

<여성경찰 인사관리>

- 매년 정기적(1월)으로 관리직 비율 상향을 위해 직급별·기능별 분석 실시
-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 즉시 시행

- '17년 12월 관리직 여성경찰 비율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기본법' 기준에 맞는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계획' 마련, 향후 성평등 위원회 보고·의결
- '17년 12월 여성경찰 계급·근무기능 등이 포함된 성별 인사통계 마련, 정기인사 후 공개(홈페이지 게시)
- '18년 1월 기능별 여성경찰 비율 확대를 위해 '선발목표제' 도입
 - ※ 본청 여성경찰 비율(現7.3%→)10%를 목표로 국관별 직위공모, 지방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 '19년은 해당연도 여성경찰 비율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설정
- <성평등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조성>
 - '17년 10월限 여성경찰에게 직무 무관,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관행에 대한 금지 지시,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교육자료 작성·배포
 - '17년 11월限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 수정(남녀경찰 복장 통일) → 지방청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게시물은 연내 교체
 - ※ 추후 제작 홍보물에 남녀 복장을 동일하게 하도록 지침 마련·하달
 - '17년 12월限 전국 경찰관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여성경찰(직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시행
 - '18년 총경이상 청렴도 평가에 성인지도 관련 설문 문항 신설
- <일·가정 양립>
 - '17년 11월限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금지·활성화 지시 하달
 - '17년 12월限 육아휴직자의 전보제한, 복직시 희망 보직 최대한 반영, 업무대행제도 활성화 등에 관한 대책 수립
 - '17년 12월限 직장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한 2차 사업 예산 확보
 - ※ 타 기관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17. 10월)
 - '18. 2월~4월 남성 경찰관의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에 관련내용 반영
 - ※ 성과관리 기능과 컨설팅 실시, 우수 경찰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지표 개발
 - '18. 3월限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성희롱·성폭력 근절>
 - 성비위 '접수-상담-조사' 등 사건 처리과정 전반 및 피해자·제보자 보호까지 관련 쉼 업무 경찰청 일원화, 별도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보 추진('19년 소요정원 확보 추진)
 - 성비위 사건 징계 및 소청·소송 경찰청 일괄 대응('19년 소요정원 확보 추진)
 - 치안정책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즉시 추진 및 관리자(관서별 과장급 이상) 대상 연1회 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 의무화
- <성평등위원회>
 - '17년 '11월限 성평등위원회 발족 지원을 위한 TFT 구성
 - '17년 '12월限 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선임(7~10명) 및 출범
 - '18년 상반기 성평등 전문관 4급 상당으로 개방직 채용 → 성평등 위원회 주도 조

직진단 및 실태조사 실시

[이행현황]

-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2018. 3. 30.), 성평등위원회 발족(2018. 4. 17.),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 6.)
- ‘여경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 일원화(인권보호담당관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 [인권보호]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17. 10. 16.)

- **강압적인 수사관행 지양** : 경찰관이 피의자, 피내사자, 참고인, 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반말, 비아냥,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 체포·구속위협, 심야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정신적 피로와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의 수사 사례가 다수 접수되는바, 조사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① 명시적으로 경찰관의 반말, 폭언, 강압적 어투, 비하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 및 ② 심야조사(자정 이후 조사)를 특별한 사정없이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③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
- **수사절차개선** : ① 피의자, 피내사자, 참고인, 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과 미리 조사일정을 협의, ② 변호인, 대리인 등이 없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일정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조사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을 협의하고, 최소한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조사일정을 정하는 원칙 수립, ③ 조사대상자 및 변호인 등과 조사일정 협의시 조사예정인 범죄의 죄명, 혐의사실의 요지를 고지,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열람하도록 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나 변호인 등이 진정성립,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 ⑤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변호인 등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참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 ⑥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조서로 남겨야 하고, 조사가 끝난 후 해당조서는 열람 등의 조치가 끝나면 조서작성 경찰관이 서명·날인하여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원칙 수립, ⑦ 조사과정에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외에 다른 경찰관이 조사과정에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을 조서에 기재, ⑧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답한 내용이나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질문 및 그에 따른 진술을 그대로 기재, ⑨ 조서가 완성된 후 조사대상자나 변호인이 해당 조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교부, ⑩ 조사대상자에 대한 전화조사는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피하기 위한 한도에서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전화조사는 지양, ⑪ 사건송치 전 관련자들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최종의견진술기한을 정해 조사대상자나 변호인 등에게 이를 통지, ⑫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측, 고소·고발인측, 피해자측에게 송치사실, 송치일자, 송치의견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통지 여부, 통지방법, 통지대상자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 ⑬ 수사상 필요성과 상당성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의 임의제출 요구 금지, ⑭ 압수·수색대상 여부에 관한 의견이 다를 경

우,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고, 경찰관은 이를 기록에 편철할 의무, ⑮ 조사대상자의 가족, 지인, 동료, 거래처,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수사확대를 암시하거나 ‘먼지털이’식 수사로 조사대상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자백 유도 금지

- **피의자 등의 자기변호노트 및 변호인의 기록 보장** : 조사과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 피조사자의 ‘자기변호노트’ 및 변호인이 변호를 위하여 신문 내용 기록을 보장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의 경우, 경찰조사 시 심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 수사시간 및 장소 등을 배려하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②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칙을 하고, ③ 나아가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여성용품 등 편의시설 및 비상약, 기본적 의료보조기구 등을 충분히 제공
-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 외국인 조사 시 경찰관이 외국어로 조사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권리 고지 및 조서의 확인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① 조사대상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칙으로 하고,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외국인은 외국어 진술서 작성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③ 경찰청에서는 전문통역인을 위촉하여 한국어로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내외 통역대학원 등과 협력하여 각 외국어별 조사안내서 개발, 각 외국어별 통역자원 확충에 힘쓰고, ④ 외국인 조사 전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 외국인요청시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⑤ 피의자나 피해자 등의 권리 및 형사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주요 국가 언어로 개발하여 조사시 교부

[계획]

- 11월 수사절차개선 관련 지침 마련
- 12월 ‘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 시범운영(9.1.~11.30. 서울청) 결과분석 후,
- ’18. 1월 수사절차개선 관련 지침과 ‘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을 통합하여 시행

[이행현황]

- 반말 등 금지 및 심야조사에 대한 금지원칙 명문화(범죄수사규칙)(2018. 8.)
-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시범운영
- 외국인 피의자 인권보호 관련 내용 매뉴얼·업무편람에 반영, 개정(2018. 8.)
- 자기변호노트 확대시범운영

○ [인권보호]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17. 10. 16.)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사후 지원까지 위기개입 모델 마련** : ① 경찰단계 위기개입 활동을 담당할 전담경찰관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현재 정원 36명에 불과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이하 ‘전담경찰’)”을 전국 253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하며, 피해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전문 인력을 경력 채용하여 배치, ② 범죄 피해 직후 전담경찰이 즉각 개입

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확인하고, 증세에 따라 안정화 기법, 자기대처기술 교육,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연대 등 응급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범죄피해자가 처한 현실과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변별을 통해 적절한 전문기관으로 연계, ③ 전담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보복범죄 위험성에 따라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수사일정 조정, 신뢰관계인 동석 등이 가능하도록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 ④ 범죄피해 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 사체 확인, 부검 현장에 대한 동행, 범죄 및 현장 감식 등으로 훼손된 주거에 대한 현장정리, 장례 지원 등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제공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 :**

① 범죄피해자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 무례한 태도, 억압적인 질문 방식 등 부적절한 조사 관행을 근절, ② 범죄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조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 강력범죄 피해자 및 여성·노인·청소년·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③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피해회복 제도 및 기타 권익구제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외국인, 노인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형의 특성에 맞는 언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이해를 도모, ④ 범죄 이후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보완·시행하고, 이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있는 확보 방안을 마련, ⑤ 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통지를 시기별로 구체화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 ⑥ 수사기관에 출석한 범죄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사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여비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

•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 및 사생활 보호 강화 :**

① 범죄피해자(신고자 및 목격자 등을 포함한다)가 보복 또는 재피해로 인해 또다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신변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신변보호 체계를 정비, ② 보복범죄 예방 및 사생활·명예권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미기재(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압수수색 집행과정 또는 수사결과 통지 과정 등에서 가명처리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③ 언론 및 사이버상 피해자의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개인정보는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비공개 원칙 수립, 피해자 정보 노출 시 언론 대응 및 인터넷 확산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시행

•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

① 복잡·다양한 피해자의 지원요구에 부응하고, 피해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현장·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②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범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위한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복지체계와 협력을 강화, ③ 범죄피해 초기, 현장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긴급생계비·장례비·주거 이전비·치료비 등 지원

사업들이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검찰 등과 더불어 **다양한 유관기관·민간단체·의료기관·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복잡한 지원절차 개선

[계획]

- '17년 내 신변보호 체계정비 및 보호조치 고도화
(체계 정비)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再피해 현황 파악·분석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정확도 제고 등 대응체계 개선책 마련
(보호조치 고도화) 스마트워치·주거지 CCTV 고도화로 실효성 제고
- '17년 내 범죄피해평가 시범운영 및 제도 운영성과 분석
- '18년, 피해자 조사매뉴얼 및 피해자 권리고지 강화방안 마련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지침, 조사매뉴얼) 수사·여청 등 관련 기능과 매뉴얼 작성팀 구성('18년 상반기)
(권리고지) 정보제공 매체다양화, 접근성 강화, 맞춤형 정보제공
- 경찰단계 피해자 위기개입 모델 마련
(일정) 외부 전문가 포함, 연구팀 구성('17년 하반기) → '18년 상반기 위기개입 모델 발표 → '18년 하반기 현장활용 추진
- 심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 전담인력 확보
(인력확보) 1급지부터 시작, 쏠 경찰서에 심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기 위해 경력채용 확대(5년간 206명)
(인사관리) 전문가 자격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교육강화) 신입교육·직무교육·전문화교육 등 수준별 커리큘럼 마련
- 관서별 피해자지원 통합 네트워크 구성
지자체·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료기관·민간단체 등과 통합네트워크 구축
- 관련부처 협의,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필요예산 확보

[이행현황]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임무조항에 '범죄피해자 보호' 명문화(2018. 4.)
-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피해자 지원 모바일 앱, 위기개입 모델마련, CCTV 예산증액, 스마트워치 고도화 등)

○ **[자치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17. 11. 3.)**

- 지방자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민생 중심, 분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찰체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①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되, 시·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 ② 자치경찰은 국가안보 위해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 외국 공조 수사를 담당하는 외사 등 국가사무 및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고도의 통합적 전문성을 요구하여 자치경찰 차원에서 당장 시행이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 생활안

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특별사법경찰 사무 外 일부 일반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등 직무권한을 추가로 부여, ③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역 치안에 대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권한이 일방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도의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 ④ 시·군·구와 연계한 광역단위 중심의 자치경찰 운용, ⑤ 자치경찰도 신분·처우 등에 있어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치경찰 운영 및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부 국가재정 지원 방안 등 검토, ⑦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상호 최대한으로 협력하도록 노력, ⑧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 정치세력이나 특정 집단 등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⑨ 원활한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행정의 치안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자치경찰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치안자원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단속·특별사법경찰 등 법집행기능을 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정리하여 ‘자치경찰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
-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되므로, 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에 맞춰 검찰-자치경찰의 관계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외에도 추가로 광역시 1곳과 도 1곳을 포함하여 총 5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에 전면 실시

[계획]

- 경찰청 내 ‘자치경찰 및 분권 추진단’ 구성, 행정안전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세부사항 논의
- ’17년 하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18년 상반기까지 국회 제출 추진

[이행현황]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2018. 11.):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 담당,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와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규모,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담당
- 자치경찰 법제 TF 구성, 당정청 협의회 통해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발표(2019. 2.),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홍익표 의원실, 2019. 3.)

○ [인권보호·수사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17. 11. 3.)

- 국무총리에 소속하되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 : ①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로서 그 소속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

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 ② 근거 법률로 현행 경찰법을 개정하여 독립된 장으로 경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배치,

- **다양성 확대와 민주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요건·신분·임기 규정**
: 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임명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 구성에 준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 필수, ②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재직된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사회적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보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되, 보궐로 임명된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재임
- **경찰 행정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의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총경으로의 승진 임용을 포함), 보직 인사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 제청하며, 경찰의 인사정책 및 승진·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 ② 법령·규칙 외에도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의 치안정책을 결정, ③ 인권 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을 부여, ④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되, 실제 집행은 ‘경찰인권·감찰본부즈만(위원회)’ 또는 경찰 내부 감사·감찰부서에서 수행, ⑤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되, 관서장의 부당 수사 개입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조사는 주로 ‘경찰인권·감찰본부즈만(위원회)’에서 담당, ⑥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 ⑦ 위와 같은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체 규칙 제정권을 부여
- **관계 법령에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①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할 의무,
-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사무기구와 회의 운영 방안 마련** : ① 위원회에 적절한 규모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일정 수 이상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위원회를 보조, ② 위원회는 매주 1회 특정 요일에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 위원 2인 이상 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 ③ 위원회 회의에는 경찰청장과 차장, 기획조정관이 참석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된 국관과 실무자가 참석 가능, ④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도록 요청 가능,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출석위원들이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 행사 가능

- 이상의 권고안을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권고안’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

[계획]

- 11월 중 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마련
- 12월 중 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 ‘18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 마련
- ’18년도 경찰법 국회통과

[이행현황]

- ‘경찰위원회규정’ 개정(2018. 7. 3.): 심의의결사항 범위 확대 및 구체화,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 신설 등
- 경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2018. 3. 진선미 의원 발의)

○ [수사개혁] 수사의 공정·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17. 10. 16.)

-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를 대비하여, 수사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가 차단되도록 ‘조직 개편’과 ‘제도적 차단’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부서를 총괄 지도·조정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사건 관련 감찰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독립성이 강화되며, 지방청·경찰서도 수사부서장이 관서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 ②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및 관서장의 인사·감찰권 제한, ‘경찰위원회·외부통제기구’ 협력하여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 ‘수사직무방해죄(가칭)’ 도입, 영장전담관 신설, 관서장의 강제수사 개입 차단 등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포함한다.

[계획]

- ’17. 12월限 조직 개편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 추진
- ’18. 2월限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

[이행현황]

- 경찰법 개정안 마련: 국가수사본부 설치 근거 마련.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의 직급·임기·자격요건 등 규정. 개별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 [수사개혁]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17. 12. 7.)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
-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 및 보완수사 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관의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다.
-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구는 삭제**한다.
- 다만 개헌 전이라도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거나,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소속의 ‘(가칭)경찰영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획]

- '18. 1월限 국회 계류 중인 형소법 개정안 및 정부 중심 개혁법안 종합적 검토, 최종 조정안 도출
- '18. 상반기 형소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개헌 시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추진

[이행현황]

- 검사의 수사지휘권, 경찰 수사, 일반적 수사준칙,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불송치 기록에 대한 검찰 통지, 영장심의위원회, 자치경찰 및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하여 논의 중.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등과 함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추진하기로 함.

○ [인권보호] 감찰 활동 개혁 방안 ('18. 1. 19.)

- **감찰 활동의 대상과 절차를 법령으로 정비하여 감찰권의 남용 방지** : ① 감찰활동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의 대상과 범위,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정비, ② 통상적인 업무 점검은 소속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감찰 활동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경찰 각 분야의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집중, ③ 감찰활동은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하고, 단순 음해성의 구체성 없는 익명의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한 감찰활동 금지, ④ 무분별한 감찰활동을 사전 통제하고 소속 기관장의 책임 아래 감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 개시 전에 구체적인 임무와 방법, 기간 등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감찰활동은 사전 보고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감찰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최초 감찰 개시 사유와 무관한 이른바 ‘별건 감찰’의 관행을 근절, ⑤ 감찰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절차 보장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며, 훈령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
- **징계 양정의 형평성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 : 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기관 공무원과 징계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 ②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기관장 등이 하급기관의 징계위원회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 ③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민간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퇴직자 외에도

일반직공무원 퇴직자 등 다양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 ④ 경찰청 감사관은 대표적인 비위와 관련한 징계사례 등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감찰활동과 징계양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또는 소송 결과, 질차상하자 등 부적절한 감찰활동을 이유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경찰청 감사관은 해당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해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등 무분별한 감찰활동이 없었는지에 대해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법률 근거 없는 비인권적 감찰 활동의 관행을 확인하고 즉각 폐지** : ① “의무위반 행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각서 등을 법률과 무관하게 작성 요구하는 관행 근절, ② 경찰의 감찰활동과 무관한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금지, ③ 감찰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
-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조직개편 등 필요한 조치 병행** : ① 경찰의 감찰 활동은 개인의 비위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 감사, 경찰의 목적 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무 감사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청 감사관은 ‘감사 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 ②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 기능에 대한 직무분석 후 인력재배치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 ③ 정책 및 성과감사 중심의 감사활동을 위해 새로운 감사 기법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담당 인력의 적성과 자질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되, 감사인력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감사관 등 감사기구 장의 인사권을 존중, ④ 성과평가로 인한 무리한 감찰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감찰활동 평가에 비위적발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의 성과평가는 폐지

[계획]

- '18. 2월限, ‘감찰행정 종합개선방안’ 마련
- '18년 상반기, 전국 감찰관 전문교육 일제실시
- '18년 상반기, 2~3개 지방청 대상으로 영상녹화제도시범실시 후 '18년 하반기 전국 확대
- '18년 하반기, ‘경찰감찰규칙’ 개정

[이행현황]

- 감찰절차 정비(2018. 11.) 및 징계행정 개선(감찰조사와 징계행정 분리, 징계대상자 방어권 보장 등)
- 주요 비위사건 징계결과 공개, 감사관실 조직개편(2018. 9.) 및 지방청 직제개편(본청과 동일. 2019. 1.)

○ [인권보호] 의무경찰 인권 보호 강화 방안 ('18. 2. 2.)

- 의무경찰 운용에 따른 각종 제도·관행에 관한 자문 및 개선을 위해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청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도록 하며, 여러 인권·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경찰의 의무경찰 운용 정책에 반영** : ① 그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내용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무경찰 인권침해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②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

도록 매년 경찰청 차원에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에 보급, ③ 위와 같은 대책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의경부대 내 인권 상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하여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무경찰 특별 인권진단을 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 ④ 내·외부 인권진단 과정에서 反인권적 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反인권적 행위를 목격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방조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치, ⑤ 특히 현재 의경 교육센터는 운영 및 시설 면에서 열악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경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신입 의무경찰이 일선부대 의무경찰의 생활여건에 버금가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운영 시스템 준비를 조속히 추진, ⑥ 현행 의무경찰대법에 따른 의무경찰 징계의 하나인 ‘영창’ 처분이 지난 ’13년도에 ‘경찰서 유치장 구금’에서 ‘의무경찰 징계자 특별교육’으로 그 집행방법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교육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행 ‘의무경찰 징계자 특별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의무경찰 징계 처분 전반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

- 의경부대 지휘요원과 의무경찰, 의무경찰 상호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고충 상담·신고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하는 한편, 의무경찰로 자녀를 보낸 가족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무경찰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부대차원에서 부모님 등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 : ① 의경부대 지휘계통 이외 경찰청 및 지방청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고충 신고상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신고 등 접수 시에는 그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소통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영, ② 고충상담 및 피해 신고 처리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내부 신고자가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 ③ 이와 같은 고충 신고 제도와 절차에 대해 복무중인 의무경찰이 정확히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의무경찰이 상시 휴대할 수 있는 명함(본청·지방청 담당자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재)을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고충 신고·상담 여건을 충분히 보장, ④ 의무경찰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통신의 자유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과시간 이후 일정시간 동안 생활실 내에서 가족 등과의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휴대폰 등 정보통신 장비 사용 지침’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부대 지휘요원과 의무경찰 가족 간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온라인 소통채널(밴드 등) 운영을 활성화, ⑤ 의무경찰 부모님을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근절 여부, 부대생활 만족도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복무중인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대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무경찰의 생활문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복무만족도를 꾸밈없이 파악하여 경찰의 의무경찰 운용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
- 지휘요원과 의무경찰의 인권 존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 : ① 지휘요원은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고, 대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복한 복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② 지휘요원이 의무경찰에게 또는 의무경찰 상호간에 사적지시 행위는 절대 엄금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③ 의무경찰 입대부터 전역할 때까지 복무단계

와 계급에 따라 맞춤형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④ 지휘요원에 의한 일방적·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내·외부 인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 진행, ⑤ 일선 의경부대의 불규칙한 복무 여건을 고려하여 영상콘텐츠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⑥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의무경찰 인권 존중에 관한 내부 워크숍·코칭스쿨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지속 추진

- **의무경찰의 안전과 건강은 인권 친화적인 의무경찰 운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시해야 할 가치로 삼고 의무경찰의 안전 및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① 의무경찰 근무 환경 및 생활공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도 병행하는 등 안전한 의무경찰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② 신입 의무경찰 등 복무부적응자(우려자 포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및 전문상담 강화를 위해 각 지방청 의무경찰 인권보호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심리상담기관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관련 예산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 강구, ③ 지휘요원은 항상 의무경찰의 건강에 세심히 관심을 갖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경찰의 진료권 보장에 적극 노력, ④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전공사상 심사 절차를 보완, ⑤ 의경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여 사망원인 등 그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의무경찰 감축·폐지 과정에서 의경부대 인원이 줄어들음에 따라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 **의무경찰 복무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경찰의 심리·정서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 ① 지휘요원은 의무경찰의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모든 의무경찰이 週 45시간 근무시간을 준수, ② 매주 2회 휴무일을 반드시 보장하고, 2회 휴무 중 1회는 반드시 외출하도록 하여 의무경찰의 휴식권을 철저히 보장, ③ 지휘요원은 의무경찰의 일과시간 이외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④ 집회·시위 현장, 범죄예방 순찰 등에 의무경찰을 배치하는 경우, 경찰관을 우선 배치하고 의무경찰은 합동근무하는 등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래의 의무경찰의 임무에 맞게 운용
- 의무경찰의 균형 잡힌 식단과 급식소 위생 관리를 위해 **각 의경부대에 배치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의무경찰 감축·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계획]

- 의무경찰 교육센터 운영 개선 추진·점검('18. 2월)
- '18년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 수립('18. 2월)
- 인권 친화적 의무경찰 운용을 위한 '지휘요원 가이드북' 제작('18. 3월)
-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관련법령 개정('18. 3월)
- 의경부대 영양사 고용안정 등 종합 지원 대책 수립('18. 4월)

- 의경부대 부모만족도 조사('18년 상·하반기, 2회)
- 경찰청 주관 의경부대 특별인권진단 실시('18. 8월)
- 의경부대 지휘요원 코칭스쿨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추진(연중)

[이행현황]

-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018. 2. 27.)
-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및 '의무경찰 관리규칙' 개정(2019. 1. 15.)

○ [인권보호]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18. 3. 9.)

-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 체계적·종합적 교육 실시, 평가·환류 도입 등 경찰 성인지 교육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교육체계 정비는 이전에 권고한 '경찰 인권교육 개혁' 과제와 연계하여, 관련 인권 교육계획 수립 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 ① 경찰교육기관 및 지방청 교육센터 교육과정 내 여성폭력관련 교육과정의 명칭을 여성 인권 보장의 추세에 맞게 바꾸고, 신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경찰의 성인지 교육과정 전반을 정비하며, 유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마련, ② 실무자-관리자 직위의 특성에 맞는 주제별·단계별 교육을 위해 신입경찰 교육과정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포함하고, 경정·경감 교육과정과 경무관 이상 고위직이 거쳐야 하는 총경급 교육과정에 성평등 정책과 성인지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포함, ③ 교육 진행사항에 대해 기관별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경찰의 인식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 ④ 경찰청과 소속기관 내 '성평등 경찰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세미나를 장려하고 정기적인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
- **현장경찰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여성폭력' 관련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사 전 과정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 :** ①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존의 사건대응 위주 교육에 경찰관의 성인지력 및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 ② 현장경찰관이 교육내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대시간 등을 이용하여 지속·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상황을 가정한 현장 FTX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③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특히 수사결과와 다른 경우 수사상의 과오와 같은 불일치 이유를 분석,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
- **'여성폭력' 관련, 신고접수나 현장 초동조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현장대응 개선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 :** ① 매뉴얼은 여성가족부와 보호시설, 여성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와 관련기관의 입장을 적극 반영, ② 매뉴얼(및 기타 지침)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 ③ 상·하반기 정기인사 후 다양한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한 관련기관 합동 워크숍, 현장순회교육,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 숙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수사절차상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특성에 맞는 배려와 치안서비스**

를 제공 : 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쏜 경찰관서 여성청소년수사팀별 여성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 ② 여성폭력에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팀장급 리더를 육성하고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수사 분위기’를 조성, ③ 경찰과 여성가족부, 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가 현재 전국 29개소 정도인 바, ’20년까지 5개소 이상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여성가족부)와 함께 추진, ④ 성폭력에 준해, 가정폭력 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피해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경찰청 훈령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가정폭력 수사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도입

- ‘여성폭력’ 전담인력을 정예화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① 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여성 폭력’ 전담인력을 선발하거나 교체할 경우,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춘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기존 전담인력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 ② ‘여성폭력’ 전담인력에 대해, 별도수당 신설, 성과 우수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우수 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여성폭력 대응’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추진기반을 조성 : ①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발우려가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후 과태료 부과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는 가해자의 격리와 접근금지 등 관련 법규조차 없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 해결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 ② ‘여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가 심적·물적 피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문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쉼터와 보호소 등의 시설 확충을 촉구하고, 기관 간 신고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소관부처와 협력, ③ ‘과’별로 산재된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이를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과’ 단위를 ‘국’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며, ‘여성폭력 대책과’를 편제하는 등 여성폭력 관련 업무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④ 신종 여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수사 전략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가칭)를 치안정책연구소내 설립·운영
- ‘여성폭력’ 관련 대응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에 여성폭력 관련 협의기능을 추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여성폭력 관련 치안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새로운 치안거버넌스 모델을 도입

[계획]

- 현장 경찰 성인지 감수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체계 정비·확대
- 현장조치 미흡사례 분석 및 현장대응 개선 지침 마련
-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 여성청소년수사팀 여경인력 배치 현황 분석, 인사지침 마련하여 여경배치 확대
-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매년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확대 추진
- ‘여성청소년 보호국’ 신설 등 여성폭력 관련 편제 추진
-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부내 부처 및 유관기관(여성가족부, 법무부 등)과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과 운영
-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 신설 운영 추진

[이행현황]

- 유형별, 단계별 ‘현장대응지침’ 마련
- 사건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2018. 8.),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 수사관 배치 확대
- 성인지 감수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미비

○ [인권보호]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방안 ('18. 3. 9.)

-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위주 대응방식에서 ‘성매매수요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성매매로 연결되는 중간매개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① 성매매 단속만으로는 성매매 수요가 줄지 않으므로 성매매 알선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②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채팅앱에 대해 앱 운영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를 알선·권유한 자를 발견할 경우 앱 이용을 차단·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 ① 접수·초동조치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② 대상아동·청소년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재활 및 교육, ③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야 할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자의 인권과 신변 보호 조치
- **성매매 단속·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수사체계와 외부 협력관계 강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 : ① 단속·수사체계의 이원화(단속은 질서, 수사는 지능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성매매범죄에 전문성을 갖춰 신속대응이 가능한 성매매 전담수사팀 확대 운영, ② 전담수사팀의 정예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③ 성매매 피해 여성 ‘전담조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청 풍속수사팀에는 여성경찰관 1명 이상 배치하는 원칙 수립, ④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의 연계·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주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 실시, ⑤ 청소년 대상 성매매 급증, 채팅앱 등 모바일과 전자기술을 이용한 성매매 방식 확대,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증가 등나날이 늘어가는 신종 성매매 수법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속과 수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내 전문 연구센터 설립·운영, 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종 성매매 기법과 양태에 대한 예방·대응 전략 구축을 위해 사이버수사과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관련부처(과기부, 방통위, 여가부)와 ICT 기술 관련 전문가, 성매매 관련 여성단체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매매 예방·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공동프로젝트 등 협력사업

수행

- **성매매단속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 ① 경찰관의 성인지력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적 수사관리와 대상별 성매매 수사의 특성 및 접근방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분석한 후 교육 내용에 반영, ② 경찰수사연수원 내 전문수사기법 교육으로 ‘풍속사범수사전문화과정’을 신설하여 성매매단속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③ 최신 우수 단속·수사사례는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단속요원에게 공유·체득될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 권역별 워크숍 개최, 내부망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해 확산, ④ 우수 단속·수사 경력을 중심으로 성매매 전문교육 동료강사를 선정하여 각 지방청별 현장순회교육을 통해 단속기법을 전수하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계획]

- ACS(Auto Call System)도입관련 업체 업무 협의(상반기)
- 채팅앱 성매매 방지 업무협의 추진 (상반기)
 - ※ 채팅앱 성매매 방지 업무협의 (채팅앱 운영자, 방통위)
- 전담수사체계 구축 (풍속수사팀 운영 확대- 하반기)
- 성매매 피해여성 전담조사를 위한 여경 배치 확대 (하반기)
- 성매매여성 조사 시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조사내용을 기록유지 확행 (3월)
 - ※ 성매매 피해자 유형 및 질문·확인사항 발굴 후 시행
- 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시 여성가족부 통보 확행 (연중)
 - ※ 지시공문하달, 여가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작 리플릿 배부 (3월)
- 치안정책연구소 내 (가칭) ‘성매매수사전략연구센터’ 설치추진 (하반기)
 - ※ 경찰대학 및 기획조정관실과 예산·인력확보 관련 협의 추진
- 디지털 성매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 협의체 구성 (상반기)
 - ※ 관련 정부부처(과기부, 방통위, 여가부), 채팅앱 운영자, 여성단체 등과 업무협의 추진
- 단속·수사 경찰 성인지 감수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체계 정비·확대 (하반기)

[이행현황]

- 성매매 수요차단 시스템 구축·운용(2018. 9.)
- 지방청 풍속수사팀 여경 1명 이상 배치 완료(2019. 1.)
- 단속·수사 체계를 갖춘 권역별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2019. 1.), 풍속사범 수사전문화 과정 신설
- 성인지력,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2018. 8.)

○ [정보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18. 4. 27.)

-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고, 이러한 정보활동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 ① 관련법에 규정된 ‘치안정보’란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축적, 분석, 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폐기하고, 현행 ‘치안정보’ 개념은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며, ‘공공안녕’, ‘위험성’, ‘예방’, ‘대응’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외연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 한계를 명확화, ②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 등)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에서만 수행, ③ 경찰의 각 기능별 정보활동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 감사를 받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를 받고 사후 공개시 시민감시기구에 의해 실효적으로 통제

- **경찰은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정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파견과 상시출입 등의 방법으로 하는 동향 파악, 사찰은 즉각 중단하며, 기구와 인력은 이에 맞게 대폭 축소** : ①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른 정보국 사무를 개선, ② 현재 정보기능의 업무 중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대외협력과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는 경찰청의 다른 부서로 이관을 추진, ③ 경찰청 정보국은 그동안의 파행과 시민의 인권보장에 소홀하였다는 반성에 기초해 정보국의 명칭, 활동, 조직 등을 재편, ④ 현행 정보경찰에 대한 심층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경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정보경찰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민생경찰분야에 재배치하도록 하며, 경찰청은 정보경찰 인력의 축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되, 현장 경찰관들의 원활한 전환배치를 위한 방안을 포함
-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 : ① 경찰의 정보활동은 개별 기능별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규정에는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모두 포함, ②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필요성이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라는 이유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과 동향파악이 금지되어야 하고, 이 점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중복 출입을 금지, ③ 정보경찰이 출입이 금지된 기관을 출입하거나, 그동안 사찰 논란이나 정치개입 등의 우려를 야기해 온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 ④ 정보경찰은 개인이나 단체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사찰, 동향 파악 등의 정보활동을 어떤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고,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상 직무수행 외 사찰 활동도 일체 중단, ⑤ 정보경찰은 물론,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간여할 수 없고,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종합·작성·배포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 ⑥ 정보경찰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이를 조정하는 행위도 금지, ⑦ 정보경찰은 다른 부서의 경찰관 등의 동향 파악, 사찰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활동 금지, ⑧ 정보경찰의 ‘전무’ ‘부사장’ 등 직무와

무관한 허위 직함 사용을 금지, ⑨ 비공식적으로 ‘분실’ 또는 ‘별관’으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 독립청사 사용을 지양하고, 별관의 정보경찰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

-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한 원칙을 준수** : ① 경찰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고, 국가안보 및 시민의 생명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비공개 정보수집 활동 가능, ②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관하되, 정보축적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이 지나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정보물에 대한 접근 이력을 남기는 등의 절차를 마련, ③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 실명제’를 도입하고,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정보 이력제’를 도입하여 정보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 ④ 경찰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근거, 절차와 방식 및 통제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내·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금지, ⑤ 정보경찰은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계획]

<정보국 기능 재편>

- ‘치안정보’ 용어 변경·직무 범위 신설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限
- 경찰청 감사관실 정기사무 감사 수감방안 마련 : '18. 8월限
- ‘경찰위원회 실질적 통제(기획조정)·시민통제(수사)’는 해당 기능의 권고안 이행과 연계하여 이행 방안 마련

<민간시설 출입 중지, 기구·인력 축소>

- 정당·언론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 중단은 즉시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출입 지침 마련 : '18. 10월限
-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은 '18. 10월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결과는 국가정보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인력 감축, 명칭·활동·조직 등 재편, 대외협력·집회신고 관련 업무 이관’ 등에 반영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삭제하고, 경직법 개정(직무범위 규정 신설)과 연계하여 “공공 안보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로 재정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및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5호(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18년限 관계부처(부서) 업무 협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정·이관하되,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현 정부 임기내,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는 '19년限 조정·이관 추진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활동 수권 규정’·‘권한 남용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 限
- ‘민간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공공기관 출입 요건’ 등 구체적인 정보활동 기준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정보활동 규칙’(경찰청 훈령)으로 제정 : 18년 限
- 별관 정보경찰 사무실 본관 이전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을 수립('18년 限), 본관 청사 확보 경과에 따라 단계적 이행

<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 ‘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 '18년 限
- ‘정보실명제·이력제’ 등을 포함한 ‘정보기록물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견문 규칙 개정 추진 : '18년 限

[이행현황]

- 인력감축, 조직개편, 국회·정당 상시출입 중단, 집회신고 민원실 이관접수 등 이행
-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2019. 1.)
-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정 미비

○ [수사개혁] 집회·시위 관련 국가원고소송에 관한 권고 ('18. 5. 11.)

-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 공권력은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한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법적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는 경찰관 개개인의 제소 여부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울러, 제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①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집회 참가자의 과격·폭력행위가 경찰의 대응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행정법규 위반을 곧바로 집회·시위가 민사법상 불법행위가 된다는 근거로 보았는지 여부, 불법 집회·시위의 고의를 곧바로 불법 집회·시위자의 폭력행위의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행위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여부, 손피의 고의 없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장비의 손상인지 여부, 탈취되었다는 증거 없이 사라진 모든 비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② 집회 주최자 및 단체와 관련하여, 민사상 ‘주·객관적 공동’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인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상 ‘상당한 주의’의 범위를 좁게 적용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인

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단순 집회·시위 참가자, 단순 집시법 위반 또는 교통방해 등의 행위자,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개별 행위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별 행위에 상응하는 손해 이외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집회 주최자 및 단체(단체대표)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이에 따라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
- 위 조치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들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특히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임한다.
- 위 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한다.
- 그동안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던 점,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도 마찬가지로 미숙했던 점, 미디어매체 등 표현수단이 제한적이고 문턱이 높아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촛불시민혁명 이후 공적 영역에서 보다 많은 국민의 비판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과거의 집회·시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들에서 전향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계획]

-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이행 노력

[이행현황]

-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관련 소송(국가 상고포기) 및 2015년 세월호 집회 관련 소송(조정성립)은 각 종결됨
- 2015년 노동절 집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는 진행 중.

○ [인권보호] 보안경찰활동 개혁 방안 ('18. 6. 15.)

- **보안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 ①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에서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 관련 법률에도 정치 관여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조항도 마련하며, 특히 보안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에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규정을 모두 적용, ② 보안 경찰은 시민사회단체나 유관 단체를 활용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단체를 창립하거나 창립을 유도할 수도 없으며, 기타의 지원도 금지
- **다양한 안보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화** : 북한의 체제 위협과 국내 안보 위해 세력의 체제 위협에만 대응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다양한 안보 위협 요소에 대응, ② 국가보안법 오·남용 금지, ③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적표현물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공신력 있는 학회나 대학 등 공인 기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이적표현물 감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에서 이적표현물 감정과 심의를 진행, ④ 북한이나 국내 안보 위해 우려 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안 경찰 양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이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이양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

- **보안 경찰의 수사 활동도 일반 수사에서의 법률적 원칙과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권고한 일체의 사항들 준수 및 내사 제한** : ① 불필요한 장기내사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 6개월 단위로 내사계속 여부, 내사범위, 내사방법 등 내사활동 전반에 관해 재평가하는 절차를 마련, ② 내사일몰제를 시행하여, 1년 이상의 장기내사가 필요한 경우 매 1년 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수사심의회에서 그동안의 내사경과, 수집된 증거의 내용 등을 기초로 내사계속 여부는 물론이고 내사의 범위 및 대상, 방법에 관하여도 심의를 받도록 하며, 보안수사심의회, 내사사건에 관한 정기적인 심의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현재 보안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향후 보안 경찰의 역할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 ① 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 활동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를 조정, ②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는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조정 작업을 진행
- **보안 경찰의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 경찰 조직 재편** : ① 각 경찰서 단위의 보안과와 정보보안과 보안계의 역할은 최소한도의 범위로 다시 조정하고, 경찰의 보안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경찰서 단위의 보안 수사는 지양하고, 경찰서 단위에서의 보안 활동도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 ②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보안분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청사로 이전, ③ 서울경찰청이 계획하는 서울 옥인동 보안 통합청사 건립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진행하되, 이 건물에는 보안 활동 부서가 입주하지 않고, 여성·청소년 등 인권친화적이며, 지역주민 친화적인 부서를 배치

[계획]

- 보안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처벌 등 권고안을 반영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추진 ('18년限)
- 공인된 학회 등과 협의, '이적표현물 감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18년限)
- '보안사건심의회' 및 '보안수사심의회' 구성, 운영('18년限)
- 안보수사본부(가칭) 신설 관련, 안보수사 역량 및 인권보호 강화 관점에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서 보안과(계) 업무도 조정하며,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는 이와 연계하여 조정 방안 마련
- 탈북민 정착지원 이관 관련,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법령 개정 요구 및 이관 방안 마련
- 보안분실의 경찰청·지방경찰청 청사내 이전은 사무공간 확보, 기능간 교환 협의 등을 거쳐('18년限) 예산 확보 후 추진

[이행현황]

- 5개 학회를 감정기관으로 선정,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체계 도입(2018. 11.)
- 보안경찰 1인 1주 이상 전문교육 이수하도록 교육과정 개편
- 내사일물체(6개월 이상 내사 시 원칙적으로 종결) 시행(2018. 1.) 및 내사 재평가 절차 마련(2018. 8.)
- 정치관여 금지조항 신설, 안보수사심의회 신설, 안보수사본부 신설, 탈북민 보호 업무 조정, 보안분실 이전(41개 중 19개 이전 완료) 등은 미완료 상태

○ [인권보호]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18. 6. 8.)

-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수사종결 전에는 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공보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보**
- **수사공보규칙에 따른 예외적, 제한적 공보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수사공보규칙을 개선** : ① 경찰개혁위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권고의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 등을 수사공보규칙에 반영, ②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공보기준을 규칙에 반영하고, 현재 범정부적으로 검토 중인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연계하여 경찰 자체적인 공보 지침을 마련하되, 공보시 “자살”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 ③ 수사공보규칙상 예외적 공보사유 및 절차 개선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련자들의 인격권 및 방어권 보장, 시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기자단,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개선방향을 설정
- **예외적으로 공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공보는 별도로 지정된 공보책임자가 전담하고, 관서장이 직접 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관련 지침을 정비** : ① 공보책임자는 수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히 대형사건 등과 같이 초기부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공보책임자를 지정·공표하여 신속한 수사진행과 합리적인 수사공보가 모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② 관서장은 자신이 수사본부장이거나, 테러·대형 안전사고 등 중요사건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전반적인 내용 위주에 한하고 세부 수사사항은 공보책임자가 수행
- **현재 보도자료 등 수사공보 자료에 대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여 현장의 규칙 이행을 담보하도록 노력** : ① 경찰청·지방청 관련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공보 전문역량을 제고, ② 규칙 위반 의심사례 발견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포상 배제, 문책 등 엄정히 조치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③ 경찰청 인권담당부서에서 부적절한 언론 보도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심의하며, 부적절한 보도사례에 대하여는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해 주의를 촉구
- **법령, 규칙 등에 위반되는 무리한 수사공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 ① 보도자료상 실적 부풀리기, 청탁성 보도 등 무리한 수사공보 관행 차단을 위해 검거 유공 특진·표창·성과평가 등의 공적 기술서 등에 언론보도 실적 기재를 금지, ② 주요 교육과정에 수사공보 관련 법령·규칙, 판례, 쟁점사례에 대한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관련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

- 수사공보 방식과 표현은 과도하게 인격권이나 도덕관념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 : ① 상세한 수법이나 피해상, 성폭력, 친족간 범죄, 반인륜 범죄, 잔혹 범죄 등은 황 등을 최소화하여 공보, ② 경찰관서 내에서 체포 피의자의 얼굴, 호송장면, 조사장면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공보는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하고, 체포 피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적극 추진, ③ 현재 '특정 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강력범의 얼굴 등 신상 공개는 세분화된 판단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내부지침 등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일관되게 운용되도록 노력
- 수사공보에 대한 기준들은, 일반적인 뉴스보도 뿐만 아니라 시사교양 프로그램, 영상물 등 제작에 협조할 경우에도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수사공보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론 등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정 방안에 대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외 입법례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등 연구를 진행

[계획]

-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기자단,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의견 수렴 진행
- 법규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 사항은 즉시 지침 등을 정하여 시행
- '18. 9.말까지 필요한 규칙 개정 작업 추진
- 체포 피의자 동선 분리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과 연계하되, 관련 예산증액 등을 적극 추진

[이행현황]

- 공보책임자 지정,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등 보호, 자살촉발 위험요인 공보제한 등 개선사항 준수 지시
-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2019. 3.)

○ [인권보호]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 방안 ('18. 6. 8.)

- 현행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유지하되, 전체 채용인원의 3% 이내로 선발한다.
- 공개경쟁채용과 마찬가지로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목에 '영어'와 '한국사'를 포함하되,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확정 공지 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치안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경찰행정학과 전공과목 중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함으로써, 경찰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대상자들이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향후 보다 형평성 있는 채용방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

[계획]

- '19년 충원계획 수립 시 부터 전체 채용인원의 3% 이내로 제한
- 공채 시험 과목 개편과 연계하여 '영어'와 '한국사'를 포함하는 방안(검정제 등) 마련·시행

- 학계·시민단체·내부직원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치안여건 변화를 감안한 경찰행정학 관련 필수 이수과목 지정

[이행현황]

- 2019년 채용계획 시 채용인원 3% 이내 수준으로 반영, 과목개편 논의 추진 중

○ [경찰대학] 경찰대학 개혁 ('18. 6. 8.)

- 경찰대학 개혁의 목표는 ① 시민의식을 겸비한 경찰관리자 육성, ② 입시성적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인재 선발, ③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 **경찰대학 문호개방을 통해 폐쇄성·순혈주의 논란을 해소** : ① 다양한 경험을 지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되,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을 구분하여 실시, ② 입학연령 등 제한을 완화하여 기회의 균등을 보장, ③ 일정 경력 이상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치안대학원을 통해 빅데이터·사이버·치안R&D 등 과학치안 전문가를 양성, ④ 간부후보생·변호사 경력경쟁채용 등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을 경찰대학으로 통합하여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다원적 경찰리더를 융합적으로 양성
-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을 통해 경찰대학생을 ‘제복 입은 시민像’에 걸맞게 육성** : ① 총 154학점에 이르는 졸업학점을 일반대학(130학점 내외)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감축하고, 학생 개개인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② ‘先 민주시민’, ‘後 현장에 강한 청년경찰 양성’을 목표로 제식 훈련, 제복 착용, 전원 합숙 등 군대식·사관학교식 생활지도 교육을 전향적으로 개선, ③ 경찰대학 관련 각종 특혜를 축소하거나 폐지
-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 : ① 대학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임기제를 도입하여 대학 운영의 전문성·일관성을 확보, ② 교수부를 민간 교수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전임교수의 역할을 강화, ③ 인사·예산·교육에 있어 경찰대학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학장이 보다 책임 있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넓히는 등 경찰 지휘부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계획]

- '19년, 학장직 개방 관련 인사혁신처·행안부 협의
- '20년, 개선 신입생 입학요건 적용 / 학장직 개방
 - ※ 선발인원 축소(100→50명), 입학연령 제한 완화. 남·여 통합모집 등
- '21년,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도입
- '22년, 편입생 선발

[이행현황]

- 교육 관련 권고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마련 및 시행.
- 총장 개방직임기제, 학비 등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 논의 중

Ⅲ. 평가 및 제안

1. 전반적인 권고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평가

가.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와 대외적인 경찰력 작용의 문제를 망라하여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과제가 논의되고 권고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 되어왔던 사안들의 경우 입법과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 많았다. 형식적인 변화도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권고안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백서」를 통해, “경찰청이 개혁안을 마련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위원들이 직접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 “권고안이 나올 때마다 경찰청 이행계획과 함께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해 나감으로써 권고안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등을 기존의 위원회와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꼽았다. 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혁과제들이 완료되면, 민주적 통제체계 구축, 인권경찰 구현, 경찰수사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대학 개혁, 정보·보안경찰 개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 5.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은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불가역적 개혁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가 1년 동안 확인한 경찰개혁 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

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모두 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혁위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행해 나가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 정보·보안경찰의 활동을 통한 일상적인 인권침해 가능성,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여부가 경찰의 자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 경찰조직에 대한 독립적·민주적 통제의 부재 등 그동안 반복되어온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경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과거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과, 제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이 마련된 것은 국가의 책임, 공권력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각 사건의 당사자들과 그 가족, 경찰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권고안의 이행여부는 여전히 경찰의 의지에 달려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경찰의 제대로 된 의지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

2. 전반적인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가. 개별적인 권고안의 발표 이후 이행계획을 밝히고, 내부논의, 외부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과제의 수가 많고, 각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약 73건²²⁾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였다는 경

22) <수사개혁 분야> “변호인 참여 실질화(2019. 5. 29. 자)” 등, <집회시위 분야> “안전진단팀 발대식 개최

찰의 보도자료 내지 입장표명이 없으면 구체적인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시각에 맞게’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하였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규칙 제·개정, 내부논의 중심으로 개혁위 권고사항이 이행되어온 상황에서 그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집회·시위 관련 권고안의 경우 세부적인 권고안은 52개에 달하는데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하위법령의 개정 또한 진행 현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한편 권고안의 이행을 통해 개혁과제를 완료하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외부적 통제기구를 제안하였고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실제로는 외부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경찰위원회, 옴부즈맨 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 이행의 방식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상명하복 식의 조직문화, 불가역적인 경찰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외부적 통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과정을 되풀이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원로들로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권고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경찰 지휘부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수사정책위원회, 경찰대학개혁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도

(2019. 4. 1. 자)”, “집회·시위 개최는 최다 불법은 감소(2019. 1. 21. 자) 등, <자치경찰 분야> ”제주 자치경찰 3단계 확대 운영 시행(2019. 1. 30. 자)“ 등, <정보경찰 개혁 분야> ”집회신고 경찰서 민원실 이관(2018. 12. 31. 자)“ 등, <민주적 통제 강화 분야> ”경찰위원회 이전(2018. 12. 17. 자)“, ”인권영향평가 1주년(2019. 6. 13. 자)“ 등, <피해자보호 분야> ”회복적 경찰활동(2019. 2. 18. 자)“ 등, <성평등 분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협약(2019. 2. 15. 자)“ 등, <여성폭력 대응 분야> ”웹하드 카르텔 단속(2019. 1. 25. 자)“ 등, <경찰대학 개혁 분야> ”신입생 입학기준이 달라진다, (2019. 4. 30. 자)“ 등,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활동 분야> ”밀양 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결과(2019. 6. 13. 자) 등 73건 배포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의 결과로서 다양한 개혁안이 도출되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 정보·보안경찰의 개혁,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마련 등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직의 자체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일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가정폭력 등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게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계획, 추진 방향과 내부적인 통제장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도입해야할 필요성조차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정보·보안경찰의 개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방안마련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개정 법안에 관한 논의과정부터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경찰개혁위원회는 1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해단하였으나, 권고안의 이행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행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공표 내지 보고와 시민사회의 개입,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民主司法**

[권력기관개혁 중간평가 ③]

국정원 개혁

- 국정원개혁위원회 관련

이주희 변호사

I. 국정원개혁위원회 개요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발족했다. 특히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개혁위 출범의 배경으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계 완전 폐지’에 이은 국정원 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정원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라 함)에 대하여 국정원은 ‘개혁의지 강한 진보 성향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고 자평하는데, 위원장에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국정기획자문위 위원), 위원장 외 민간전문가 7인에는 이석범 前 민변 부회장(법조계),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시민단체),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학계),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학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학계),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계), 오정희 前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밖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이 함께 위촉되었다.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하였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①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조사결과의 對국민 공개 및 후속조치 시행, ③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④ 제보·신고 접수 및 추가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조직쇄신 TF」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등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15가지 ‘조사사건’은, ① 국정원 간부의 청와대 비선보고 사건, ②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③ 노무현 前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④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사건, ⑤ 보수단체 지원 사건, ⑥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⑦ 선거 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 ⑧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⑨ 언론보도 현안 관련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⑩ 좌익효수 사건, ⑪ 채동욱 前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⑫ 화교 간첩수사 증거 조작 사건, ⑬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사찰 사건, ⑭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⑮ 사회 주요인사 불법사찰 사건 등이다.

국정원개혁위는 2017년 12월 21까지 위 15개 조사사건에 대해 심의·권고 절차를 마친 후, 국회 정보위 및 국민 제보사항에 대한 예비조사결과에 따라 ①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② 노무현 정부 진보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③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④ 노조과괴 공작 관여, 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⑥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⑦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등 7개 의혹사건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가 선정 사건들에 대한 조사는 활동기한(2017. 6. 19.부터 2017. 12. 21.)이 종료된 개혁위를 대신하여 국정원 감찰실에서 진행한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

했으며, 개혁위는 활동 종료 후에도 ‘개혁지원단’을 두어 ▲백서발간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총 7명: 원내 2명, 개혁위원 5명, 2018. 3. 말까지 한시적 운영)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300페이지 분량의 백서 초안을 작성하고 교정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에는 개혁위가 지적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부적절한 활동과 개혁과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백서 완성본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백서 제작은 마무리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개혁지원단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도 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조사를 요구한 7대 추가 의혹에 대한 검찰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발표 직전 일정을 취소했다.²³⁾

개혁위는 2017년 6월 19일 발족한 이후 같은 해 12월 2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면서 총 33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위 15개 사건에 대해 처리방향을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국정원의 보도자료 형태를 통해서만 발표되었는바, 이하의 내용들도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개혁위의 활동 내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국정원 개혁위 활동 연혁 >	
2017. 6. 19.	발족
2017. 8. 3.	「적폐청산 T/F」로부터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작성 문건’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원세훈 前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음 (이하 세부내용)
2017. 8. 14.	「적폐청산T/F」 조사 대상 사건 중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댓글사건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의뢰 권고 결정

23)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6707&code=11121100&cp=du>

2017. 8. 24.	국정원은 정치관여 근절을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정보 관련 부서도 모두 해편한 바 있음. 관련하여 개혁위, ‘정치관여 부서 부활 방지’ 내부규정 마련할 것을 권고
2017. 8. 30.	「적폐청산T/F」 조사사건 중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이미 수사 의뢰(8월 21일)된 「외곽팀」 팀장 30명 외 18명이 중간에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 18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 권고결정. 또한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이 7월 19일 신청한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 件과 관련하여, ‘사회 주요인사 불법 사찰 의혹사건’을 「적폐청산 T/F」의 조사 사건으로 추가 조사 권고
2017. 9. 11.	「적폐청산 T/F」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권고
2017. 9. 12.	‘양지회의 댓글공작 개입’ 관련, 일부 언론이 전체 양지회 회원이 댓글공작 및 증거인멸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 「적폐청산 TF」는 댓글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소수 양지회 간부 및 회원을 활용하여 진행한 사건임을 확인.
2017. 9. 18.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 주요내용 언론 공개 권고 결정
2017. 9. 25.	「적폐청산 T/F」로부터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원세훈 前 원장 등의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
2017. 10. 16.	‘국정원 간부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및 ‘김대중 前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모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을 권고
2017. 10. 16.	국정원,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직원 복무규정」 전면 개정 국정원 개혁위 권고에 따라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이외의 국내정보수집 및 지시 금지 △국내정보수집 명령 등에 대한 위법명령심사 청구 제도 활성화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내정보활동을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내용 등의 「국가정보원직원 복무규정」 전부 개정안을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
2017. 10. 23.	개혁위, ① ‘보수단체 지원 사건’ 관련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원 주선사업’(매칭) ② ‘채동욱 前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③ ‘노무현 前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 ④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 수사의뢰(①, ②, ③번 사건) 및 검찰 자료협조(④번 사건)를 각 권고

2017. 10. 30.	<p>①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② ‘보수단체 지원 사건’ 관련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안보 DVD’ 관련내용 ③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②번 사건) 및 검찰·관련기관 자료협조(①, ②, ③번 사건)를 각각 권고</p>
2017. 11. 6.	<p>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② ‘보수 단체 지원 사건’ 중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관련 내용 ③ ‘명진스님 불법사찰 사건’ ④ ‘좌익효수 사건’ ⑤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 ⑥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①, ③번 사건), 검찰과 법원에 자료제출(②, ④번 사건), 일부 조사내용 보완(⑤, ⑥번 사건)을 각각 권고</p>
2017. 11. 8.	<p>①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 ②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①번 사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①, ②번 사건)을 권고</p>
2017. 11. 13.	<p>‘院 개혁 제도적 완성’ 등 향후 운영방향 논의 - 국가정보원법 年内 개정 추진</p>
2017. 11. 29.	<p>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예산 투명성’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추진 -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법에 명시</p>
2017. 12. 19.	<p>국정원 개혁위, 활동종료 계기 ‘성과 및 평가’ 발표 - 정치개입 근절 위해 국내부서 해편 - 과거 위법·위규 적폐행위 청산 - ‘전문 정보기관’ 재탄생 위한 역량 강화방안 마련</p>

II. 개혁위 권고 내용 및 이행 현황

㉠ 국내 업무부서 해편 ⇒ 정치관여 근절 및 본연 업무역량 강화	
권고	<p>■ 국정원 내부조직인 「조직개편 TF」와 정치관여 소지 부서·업무 등을 집중 토의,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적쇄신과 조직재편을 권고</p>
국정원 개편안	<p>☞ 개혁위 권고 반영 주요내용 √ <u>국내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던 2개 부서를 해편, 해편부서 인력을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및 과학분야 등에 재배치</u></p>

	<p>√ △1차장-해외, 2차장-북한, 3차장-방첩 등으로 조직편제 개편 △‘국내차장’명칭 삭제 △일부 지부장 직급 하향 조정 및 부지부장 직제 폐지</p>
평가	<p>1. 국내정보수집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국내”정보수집 부분 삭제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축소한 것은 바람직. ■ 다만 원래 같은 조항 제3호의 대공수사권(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죄등)을 삭제하는 대신, 제3조1항1호 라목에 “위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수집, 분석 권한’을 여전히 부여하고 있음. ‘북한과 연계된’ 정보에 대한 판단에 국정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농후함. ■ 또한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제19조)되었으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만 규정되어 형벌의 억지력이 거의 없음. <p>2. 사이버 심리전담으로 국내정치활동 개입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1항4호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조항 및 제2조7호,10호 “사이버공격”,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의 범위를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 (7호 “사이버공격”이란 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가 직접 또는 내국인과 연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악성프로그램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역시 3조위반시 처벌조항(제19조)이 1,000만원 이하 벌금형만 규정되어 형벌의 억지력이 거의 없음.

② 적폐청산 ⇒ 조사대상 엄정 선정 및 결과처리 자문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개입·민간사찰·직권남용 등 의혹사건 중 국민적 의혹·불법정황이 큰 사안 15개를 조사사건으로 선정, 「적폐청산 T/F」에 권고 ■ 15개 이외 국회 정보위원 요구 및 국민제보 사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7개 의혹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
국정원 개편안	<p>☞ 개혁위 권고 반영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위 권고를 수용 15개 사건 관련, 총 54명(원세훈 前원장 등 전직 4명, 민간인 50명)을 검찰 수사의뢰·관련자료 지원 등 조치 √ 추가 조사중인 사건(7건)은 감찰실에서 조사 마무리 후 결과를 공개할 방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의 정치개입, 민간사찰, 직권남용과 관련한 15개 사건에 대해 조사 후 수사의뢰 한 것은 바람직. 현재 관련자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거나 재판 진행 중. ■ 다만, 추가 7개 사건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하는 국정원개혁위를 대신해 ‘감찰실’에서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식적 결과발표가 없어 수사 등 사건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③ 국정원법 개정권고안 마련 ⇒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 추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기 위한 조직개편·적폐청산에 이어 국정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을 권고 ■ △국정원 명칭 변경 △직무범위 명확화·구체화 △대공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외부 통제 강화
국정원 개편안	<p>☞ 개혁위 권고 반영 주요내용</p> <p>√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정보위에 보고(11.29) 및 입법논의 위한 참고자료 제출</p> <p>(※ III. 이하에서 상세서술)</p>
평가	<p>1. 수사권, 심리전담활동, 사이버보안 총괄 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과 같이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국내'부분을 삭제하고 3호 대공수사권 이관, 제11조2항 수사권 이관한 것은 바람직. 그러나 대공정보수집,작성,배포 등의 행위는 여전히 가능하고 '관련정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한계 ■ 심리전담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명확하지 않음. 제3조에서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고는 하나, 규정이 포괄적(2항'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이어서 '심리전담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음 ■ 특히 제3조1항 5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이 삭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조항 제6호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보안업무의 총괄 조정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게 있고 특히 사이버보안 영역에서도 국정원장이 청와대, 행정자치부 등에 대해 지휘권한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정원장의 기획조정권한을 오히려 구체화한 측면도 있음. ■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의 정의조항을 신설한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정의된 영역에만 확실히 역할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개정안의 1000만원 이하 벌금조항만으로는 위하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p>2. 예산 수립, 감독 문제</p> <p>- 여전히 ① '세부항목 제시없는 총액 수립, 총액 제출, 총액 심사'(법 제12조2항,3항)이고, ② 자체 예산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며(12조3항,4항) ③ 국회예결위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지 않음. 사실상 이 부분들에 대한 개정은 전무함.</p> <p>(1) 예산 총액수립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세부항목 대신 여전히 '총액'으로 심사하는 문제 개선 안됨 ■ 국정원 예산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여전히 타 기관 예산을 '총액'으로 전횡할 수 있는 문제 개선 안됨 <p>(2) 예산 집행 관리감독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위해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12조6항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7항 신설)하게 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통제심의위원회는 내부기관이고 심의기관으로 감시감독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또한 여전히 예산 비전문기관인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여 예결산 전문기관인 예결위의 개입이 불가함. 게다가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원칙 고수로 국정원 예산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통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움.
--	--

④ 내부제도 개선 ⇒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지침 등을 통한 세부통제 강화 제안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강구
국정원 개편안	<p>☞ 개혁위 권고 반영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정보 수집 금지, 위법명령 청구제도 활성화 등 복무 관련규정 개정 √ 국내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부서 설치 금지 등 조직관리 관련규정 개정 √ 인권보호관제 신설 및 합법적 수사절차 준수 강화 등 수사국 내규 마련 √ 정무직·부서장이 참여하는‘특수사업비 집행통제심의위’(국정원) 및 부서장·준법지원관이 참여하는‘부서사업비 집행통제심의위’(쏘부서)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지원관은 업무·예산 등 분야에서 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배치한 변호사 직원으로, 서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 배치 √ 국정원 직원 설문조사 실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방안 강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법 제3조1항4호에 따라 ‘대공 관련성’을 이유로 국내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 ■ 집행통제심위원회가 내부조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 높음. ■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문조사 외에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⑤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 중장기적·미래지향적 추진	
권고 및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채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로로 우수 인재 채용, 직원 전문성 강화 ■ △외부전문가 영입 △직무분야별 실무 커리큘럼 확대 △교육담당 부서 강화 등으로 교육인프라 제고 ■ △군대식 상명하복·권위주의 문화 청산 △상급자 솔선수범 문화 확산 △효율적 업무추진 방식 정착 등 조직문화 개선 ■ 계급정년제 관련, 부작용 차단 방안을 마련한 후 폐지하는 방안 검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식 상명하복, 권위주의 문화 청산, 효율적 업무추진 방식 도입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Ⅲ. 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안) 주요 내용 및 평가

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국정원안)

가. 주요 내용

조 항	주요 내용
명칭 변경	√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제2조의2 (정의)	√ 직무 관련 정의규정 신설 ☞ 1호(국외정보)·2호(북한정보)·3호(방첩)·4호(대테러)·5호(방위산업침해)·6호(경제안보침해)·7호(사이버공격)·8호(국제범죄조직)·9호(초국가행위자)·10호(국가 및 공공기관)·11호(조사)
제3조(직무) 제1항 제1·4호	√ 직무범위의 명확·구체화 ☞ △ 국외 및 북한 △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 방위산업 침해 및 경제안보 침해 △ 「형법」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 고무죄 및 불고지죄 제외)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에 관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관련 예방 및 대응
제3조(직무) 제2항	√ 정보수집 방법·수단의 예시적 열거 ☞ △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 △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협조 요청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제3조(직무) 제3·4호 삭제	√ 대공수사권을 他 기관에 이관
제12조 (예산회계) 제3·5·6·7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통제 강화 ☞ △ 비밀활동비 他기관 계상시 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한 「정보위」심사 준수 △ 모든 예산집행시 증빙서류 첨부(다만, 기밀이 요구될 경우 예외 가능)

	<p>△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p> <p>△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정보위」에 보고, 일정규모 이상 예산변경 필요 시「정보위」의 사전승인·사후보고</p>
제19조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p>√ 직무범위 이탈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규정(1,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p>

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院 개정(案)
국가정보원법	대외안보정보원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안보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p>	<p>제2조(지위) 대외안보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p>
	<p>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정보"란 국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북한정보"란 북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방첩"이란 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말한다. 4. "대테러"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p>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의 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말한다.</p> <p>5. “방위산업침해”란 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방위산업 관련 군사상·공무상 기밀과 이에 준하는 정보의 유출 및 금품 등을 매개로 한 안보침해행위를 말한다.</p> <p>6. “경제안보침해”란 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산업경제정보 유출, 자본 유출입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말한다.</p> <p>7. “사이버공격”이란 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가 직접 또는 내국인과 연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악성프로그램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p> <p>8. “국제범죄조직”이란 국제사회의 질서와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2개국 이상의 국가 간 관련성을 지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을 말한다.</p> <p>9. “초국가행위자”란 어떤 국가나 지역 및 민족 등에 속하지 않고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한다.</p> <p>10. “국가·공공기관”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및 軍기관·부대 등을 말한다.</p> <p>11. “조사”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	---

<p>제3조(직무) ① <u>국정원</u>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제3조(직무) ① <u>정보원</u>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u>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u></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가. 국외 및 북한</p> <p>나.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p> <p>다. 방위산업침해 및 경제안보침해</p> <p>라.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10조 제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p>
<p>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p>	<p>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p>
<p>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p>	<p><삭 제></p> <p>대공수사권 이관</p>
<p>4. <u>국정원</u>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p>	<p><삭 제></p>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3.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신 설>	4.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신 설>	<p>② 정보원은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 2.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협조 요청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획·조정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조(조직) ① 정보원의 조직은 대외안보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② 원장은 제3조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편제를 설치할 수 없다.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p>제5조(직원) ① <u>국정원</u>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p>	<p>제5조(직원) ① <u>정보원</u>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p>
<p>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p>	<p>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p>
<p>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u>정보원</u>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u>국정원</u>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u>정보원</u>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p>	<p>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p>
<p>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p>	<p>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p>
<p>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p>	<p>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p>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p>	<p>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p>

<p>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대외안보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p>	<p>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p>
<p>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p>	<p>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u>국정원</u>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p>	<p><u><삭 제></u> 수사권 이관</p>

<p>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p><신 설></p>	<p>제11조의2(불법 감청 등의 금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예산회계) ① <u>국정원</u>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p>	<p>제12조(예산회계) ① <u>정보원</u>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p>
<p>② <u>국정원</u>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u>정보원</u>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u>국정원</u>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u>그 예산</u></p>	<p>③ <u>정보원</u>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u>그 편성과 집</u></p>

<p>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p>	<p>행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p>
<p>④ <u>국정원</u>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u>국정원</u>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정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정보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⑥ 정보원은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p>
	<p>⑦ 원장은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규모 이상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집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u>국정원</u>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u>국정원</u>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p>	<p>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p>

<p>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p>
<p>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p>	<p>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p>
<p>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p>	<p>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p>
<p>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p>	<p>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p>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원장은 직원이 제3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 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 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삭 제> 수사권 이관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7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8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u>국정원</u>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삭 제></u> 수사권 이관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u><신 설></u>	제19조(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제3조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민사회단체(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제안사항 및 개정안 반영 여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제안사항			개정안 반영 여부(24)
국정원 역할·기능	1	<u>< 수사권 ></u> ● 법3조1항3호 (수사권) -> 폐지 ● 법3조1항4호 (직원수사권) -> 폐지	○

축소	2	<p>< 기획조정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3조1항5호 (정보보안업무기획조정권) -> 폐지, 타기관 이관 ● 조정규정 -> 폐지 ▷ + 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위상 격하 	×
	3	<p>< 국내정보 수집작성배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3조1항1호 (국외,국내정보수집작성배포) -> ‘국내’삭제,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 수집작성배포’로 개정 	○
	4	<p>< 심리전담활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 심리전담활동 금지(불법활동), 계속 활동시 조직폐지 	×
	5	<p>< 비밀보호,신원조사,보안측정 등 보안업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3조1항2호 (보안업무) -> 타기관 이관 ● 보안규정 -> 타기관 이관 ▷ + 비밀보호,신원조사,보안측정및보안사고조사업무 불요, 삭제 	×
	6	<p>< 사이버보안 총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규정 (국가사이버보안 국정원장 총괄조정) -> 타기관이관 ▷ + 사이버보안 총괄 ->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관 ▷ + 국가정보통신망및기반시설 사이버보안 -> 행정자치부 이관 ▷ + 국정원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자치부 산하 이관 	×
	국정원 감독 통제	1	<p>< 전문 감독기관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 감독자인 정보위원회와 감독대상인 국정원 사이에 정보의 현격한 차이로 감독기능 유명무실화, 정보위 감독기능강화 필요 ● 국회“전문가형 정보기관감독기구(옵부즈맨등)”신설(국회법개정) ● 대통령등 행정부소속 “정보감찰관 제도”신설(국정원법등개정)
2		<p>< 정보위 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 정보위는 ‘검임’위원회로 현안대응위주 활동, 국회의원 외 보좌진 회의배석불가, 국정원 자료열람불가 ●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로 변경 ● 비밀유지·기밀취급인가 보좌진들 회의배석, 자료검토케 	(타법) ×
3		<p>< 자료답변 제출 의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 법13조 (자료·답변제출거부권) 정보위 요구에 1차거부, 2차(+총리소명시)거부가능. 정보위 사실확인불가, 거부권 남발가능 ● 법13조 개정 -> 국정원장 거부, <u>정보위 재요구 의결시</u> 필수제출 	×
4		<p>< 정보위 비공개주의 개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 국회법54의2 (정보위회의비공개원칙). 국정원등관련법령심사 비공개(ex.테러방지법안,국정원직원감찰결과). 비밀주의 과 	(타법) ×

	도	● 국회법54의2 개정 -> 원칙 공개. 안보 중대명백시에만 비공개	
5		< 예산 항목 공개 및 자체예산으로 일원화 > ① 본예산 (법12조2항: 총액만 제시, 특활비로 전액분류 가) ② 비밀활동비 (법12조3항: 다른기관 예산 포함, 예견불가능한 활동) ③예산회계 특례법상 예비비 (기재부 예비비편성, 국가안전보장업무) ● ①-> 법12조2항 전면개정(총액제출 및 특활비분류 최소화) ● ②-> 법12조3항 폐지 (국정원예산으로만 편성) ● ③->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국정원예산으로만 편성)	×
6		<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 개정 > ○ 문제점 : 국회법 84조4항. 국정원소관 예결산안, 국정원 기획조정대상부처 정보예결산안은 정보위심사만, 예결위 별도심사 없음 ● 국회법84조4항 개정-> 예결위 특별소위가 국정원예결산 심사케	(타법) × (정보위 보고△)
7		< 국정원직원 수사 통보조항 삭제 > ○ 문제점 : 직원법23조3항, 수사기관이 국정원직원 수사 시작시 국정원장에 통보. 국정원차원 조직적 방해나 수사밀행성 저해 ● 법23조3항 폐지, 공무원법83조3항(10일 이내 보충적통보)만 적용	(타법) ×
8		< 직무범위 이탈시 처벌규정 신설 > ○ 문제점 : 법3조규정 직무범위 외 국가안보무관 정보 수집시 처벌조항 부재. 법9조(정치관여금지) 행위 전 수집및활동 처벌불가 ● 법3조 범위 외 정보수집행위시 형사처벌조항 신설	△ (1천만원 이하 벌금)

3. 평가

가. 들어가며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국정원이 위와 같이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정원 개혁안들의 추진현황이 외부에 공개된 바 없어 그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이행여부보다는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24) 반영 : ○, 미흡 : △, 미반영 : ×

나. '수사권' 폐지 문제

1) 대공수사권 문제

대공수사권, 즉 국정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부분을 삭제하고 이관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의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대신,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장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10조 제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즉 대공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 외의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북한과 연계된' 정보 판단에 국정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 직원수사권 문제

법 제3조 제1항 제4호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 '국내정보 수집 작성 배포권한' 폐지 문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국내 보안정보, 대정부전복" 부분을 삭제하여 국정원의 국내정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대공수사권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공 관련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관련성" 부분에 대한 국정

원의 자의적 판단 여하에 따라 국내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라. ‘사이버·심리전담활동 등 국내정치 개입’ 금지 문제

제3조 제1항 제4호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따라 제2조 제7호 및 제10호 “사이버공격”,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의 범위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 제7호 “사이버공격”이란 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가 직접 또는 내국인과 연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악성프로그램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0호 “국가·공공기관”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기관·부대등을 말한다.

그러나 심리전담활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시 ‘조직을 폐지’하는 정도의 강력하고도 엄격한 금지 및 처벌이 없다는 점은 문제이다.

또한 제3조 제2항에 “정보원이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정보 수집 작성 배포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보원이 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심리전담활동인지 합법적 범위 내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결국 기존의 관행이 계속되는 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정원의 대공관련 정보수집 과정에서 국내 정보수집 및 심리전담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마. ‘직무범위 이탈시 처벌’ 문제

법 제19조 국정원장 직원 등에 대해 “제3조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정치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

별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① 제3조의 직무범위를 일탈하더라도 그것이 ‘정치관여 목적성’이 존재했을 때에만 금지된다는 점, ② 위반하더라도 징역 등의 처벌 없이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매우 미약한 처벌로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위 제3조에서 개정,신설한 각 직무범위를 한정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바. ‘보안 총괄’ 폐지 문제

제3조 제1항 제5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이 삭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조항 제6호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보안업무의 총괄 조정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게 있고 특히 사이버보안 영역에서도 국정원장이 청와대, 행정자치부 등에 대해 지휘권한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정원장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획조정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개악 소지가 있다.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권한은 국정원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총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은 행정자치부로,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하여 국정원의 보안총괄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사. 예산 수립, 감독 문제

국정원의 예산에 대하여 수립과 집행에 대해 제대로 감독해야한다는 비판이 높았으나, 여전히 ① ‘세부항목 제시 없는 총액 수립, 총액 제출, 총액 심사’(법 제12조 제2항, 제3항)이고, ② 자체 예산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며(제12조 제3항, 제4항) ③ 국회예결위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 사실상 이 부분들에 대한 개정은 전무하다.

예산 집행 관리감독에 대해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제12조 제6항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분기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제7항 신설)하게 하였으나, 집행통제심의위원회는 내부기관이자 심의기관으로 감시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여전히 예산 비전문기관인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여 예결산 전문기관인 예결위원회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보위원회의의 비공개 원칙 고수로 국정원 예산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통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바뀌지 않았다.

IV. 향후의 과제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6월 19일 출범하여 같은 해 12월 21일까지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원의 적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수사의뢰 하였고, 국정원 권한 남용의 핵심적 근거였던 수사권 및 국내정보수집 등의 폐지를 권고하여 국정원이 이를 반영한 국정원법개정안을 자체 제출하게 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은 약속했던 개혁위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표면적 이유로는 수사 재판 중인 사건들이라는 이유, 내부적으로는 국정원 내부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는 이유다. 추가 수사의뢰했던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원 감찰실에서 수사 결과를 제출하기로 한 것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또한 국정원발 국정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핵심적인 문제들(국정원장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축소, 정보위 비공개주의 개정, 국정원 예결산 과정 감독, 직무범위 이탈시 강력한 처벌 등)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국정원이 2017. 11. 29. 위와 같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담긴 자체개정안을 제출하고 청와대도 2018. 1.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국정원·검찰·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정원 내

부에서 수사권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된 바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여당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였으면서도,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 안전에 상정조차 않고 있다가 급기야 국정원법 개정안을 소위 패스트트랙 안에서도 제외했다. 현재의 국회 파행 국면에서는 미흡한 국정원발 개정안조차 논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사실상 문 정부 내에 국정원법 개정과 국정원 개혁은 점점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국정원의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의 진전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은 개혁의지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民主司法**

[입법의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최용근 변호사

I.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내용과 제정 배경, 운용의 경과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의 예외와 관련하여, 제312조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²⁵⁾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 등)이 작성한 피신조서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그 내용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인정되고, 조서 기재 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될 경우 증거로 사용이 가능(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신조서에 대하여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음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방법(가령 영상녹화물)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된다면 역시 증거능력을 부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할 수 있다.

25) 이하 ‘피신조서’라 약칭한다.

이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비해 그 우월성을 인정하여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규정한 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식민지 조선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조서재판’에 의한 것이었다. 조서재판은 식민지시대 일본인 법관이 우리말을 몰라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일본말로 작성된 조서를 읽고 재판한 것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⁶⁾

해방 이후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 그 기초자들은 수사단계까지 포함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조서재판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형사사법 잔재의 극복, 민주주의의 실천, 특히 인권옹호의 법적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15. 발족한 법전편찬위원회는 1949. 1. 8. 17개 항목의 형사소송법요강안을 심의하였는바, 당해 요강안 제1항은 “민주주의적 형사재판제도를 확립”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²⁷⁾ 나아가 법전편찬위원회는 1950. 1. 22. 형사소송법 제3장 공판에 관한 40여개의 조항을 심의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대하여 독립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조문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²⁸⁾ 한국전쟁 등의 사정으로 형사소송법 제정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1952년경 법전편찬위원회는 국무회의에 형사소송법안을 제출하였고, 1953년 정부는 당해 형사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제정안의 수정을 주도했던 엄상섭 의원은, 국회 수정안의 목표를 “형사재판의 민주화와 인권옹호의 강화, 그리고 형소법의 정치적 이용 방지”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²⁹⁾ 특히 엄상섭은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독회석상에서, “범죄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자백 강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나,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지연 등의 문

26) 김전수, 사법개혁리포트, 박영사(2008), 163쪽

27) 한인섭, 형사소송법 제정과정과 김병로, 법학연구 제28호 제2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105-106쪽

28) 한인섭, 위 글, 113쪽

29) 한인섭, 위 글, 118쪽

제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한 것”³⁰⁾이라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논의의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달리 취급한 것은 당시 부족한 수사 인력과 경찰의 자질 문제 등 불가피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한 임시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시 입법의 기초자들 사이의 공감대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형태의 규정은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고, 형사재판이 조서 재판 형태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2004년 대법원은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던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법 문언에 충실하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로 종래 형식적 진정성립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연속하여 특신상황이 추정됨으로 인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법정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약 없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던 재판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형사사법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검찰의 반발과 법원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³¹⁾ 미흡한 개혁의 형태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이르렀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 등을 활용한 진정성립의 대체적 증명방법(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허용하는 등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완화하여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서재판의 억제와 구두변론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공판중심적 형사재판의 정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30) 신동운 편저, 효당 업상섭 형사소송법 논집, 99-100쪽, ; 김선수, 위 책, 164쪽에서 재인용

31) 이에 대하여는 김인회,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2018), 496쪽 참조

II.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1.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 강화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판단이 공개된 법정에서 행해지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사이의 공방과 입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재판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에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법원에 대하여 구두진술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로 피의자의 직접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이 변호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밀실수사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설사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이 법관 면전에서 직접진술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경찰이 아닌 검사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완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재판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함으로써 법정외 아닌 법관의 집무실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는, 이른바 ‘조서재판’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가 아닌, 오로지 법관만이 법정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가릴 수 있게 하려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당사자대등주의 강화)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주의가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대등주의 내지 무기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무기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과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는 거증책임을 지우고 객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대등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이 요구된다. 수사절차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형사소송의 본질상 검찰과 피의자/피고인 사이에 완전한 당사자대등은 기하기 어렵다.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강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률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열등감 때문에 검사와 대등하게 맞서기도 어렵다. 이를 보강해 주는 것이 변호인 제도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로 인해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당사자대등주의를 실질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것이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경찰 작성 피신조서의 인정요건보다 완화함으로써 형사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법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사자대등주의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3. 검찰에 대한 신뢰 부족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우월한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을 두고,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객관의무에 기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자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 사회 및 재판의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적 정서와도 동떨어져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대부분 조사에서 경찰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중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도 다수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은 조서 작성의 실질을 잘 보여준다. 조서는 속기가 아니고, 검사나 수사관 자신들의 취지에 맞게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다. 조사자의 구상에 부합하면 답변을 그대로 기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복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거나 아예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비일비재하며, 조서 수정 역시 피의자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서는 결코 객관적인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며, 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기관의 편향(bias)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공익의 대표자로 인식되기 위해서도 무리한 수사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4. 외국 법제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

피신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외국 법제에서도 찾기 어려운 유일한 입법례³²⁾이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조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또는 메모에 피의자 진술이 담겨 있는 경우 피신조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작성 주체가 사법경찰관인지 검사인지에 따라 증거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2호)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10쪽

능력 인정요건이 다르지 않고 증거능력은 전문법칙(예외)에 의해서 결정된다.³³⁾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서 규정³⁴⁾하고 있는 대면권은, 국가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외의 진술을 수집하고 이를 전문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법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견해이기도 하다.³⁵⁾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직접주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피고인 또는 증인을 공판정 내에서 직접 신문해야 하고 공판정 외에서 신문한 내용이 담겨진 조서나 기타 서면을 낭독하는 것으로 직접신문을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공판 ‘직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경우 검사·변호인·피고인의 동의,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법정에서의 신문 불가능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조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구두신문을 대체할 수 있고 원진술자 및 신문관련자의 증언으로 조서의 내용이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이 때 조서의 작성 주체가 사법경찰관인지 검사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지 않다.³⁶⁾

프랑스는 피신조서의 작성자가 직접 보고 듣거나 확인한 사항을 법률상 양식에 따라 직무 수행 중에 작성한 경우 증거능력을 갖게 되고, 경죄를 인지하는 조서 및 보고서는 참고자료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때 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지 않다.³⁷⁾

일본은 조서에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진술자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거나 특신상황 하에서 조서가 작성될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 이 때 조서의 작성 주체가 사법경찰관인지 검사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지 않다.³⁸⁾

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2호)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10쪽

34) 미국 수정헌법 제6조 : 모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가진다.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35) 권영법,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저스티스, 한국법학원(2012), 211쪽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2호)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10쪽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2호)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11쪽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2호)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11쪽

Ⅲ. 개정방안

1.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비교³⁹⁾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개정안을 일별 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백혜련 의원안 ⁴⁰⁾)	금태섭 ⁴¹⁾ · 표창원 ⁴²⁾ · 이동섭 ⁴³⁾ · 김석기 ⁴⁴⁾ · 심상정 ⁴⁵⁾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⁴⁶⁾	오신환 의원안 ⁴⁷⁾	박지원 의원안 ⁴⁸⁾	채이배 의원안 ⁴⁹⁾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 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 고인이 진술 한 내용과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조서 등) <삭 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조서 등) <삭 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조서 등) <삭 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조서 등) <삭 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 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적법 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서 공판준 비 또는 공 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11쪽
 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8건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작성], 2018. 11. 67-71쪽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검·경 수사권 조정>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43호)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작성], 2018. 11. 43-48쪽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2호)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7-11쪽 참조

<p>현행 (백혜련 의원안40))</p>	<p>금태섭41)· 표창원42)· 이동섭43)· 김석기44)· 심상정45) 의원안</p>	<p>박범계 의원안46)</p>	<p>오신환 의원안47)</p>	<p>박지원 의원안48)</p>	<p>채이배 의원안49)</p>
<p><u>동일하게 기 재되어 있음 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서의 피 고인의 진술 에 의하여 인정 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 이 특히 신 빙할 수 있 는 상태하에 서 행하여졌 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u></p> <p>③<u>검사 이 외의 수사기 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적법 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 로서 공판준 비 또는 공</u></p>	<p>③ <u>피의자 신문 조 서 는</u>50)----- ----- ----- ----- ----- ----- ----- ----- -----</p>	<p>① <u>피의자 신문조서</u>-- ----- ----- ----- ----- ----- ----- ----- -----</p>	<p>① <u>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 던 피고인</u></p>	<p>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u>----- ----- ----- ----- ----- ----- ----- ----- -----</p>	<p><u>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 할 때에 한 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u></p>

현행 (백혜련 의원안40))	금태섭41)· 표창원42)· 이동섭43)· 김석기44)· 심상정45)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46)	오신환 의원안47)	박지원 의원안48)	채이배 의원안49)
판기일에 <u>그</u> <u>피의자</u> 였던 <u>피고인</u>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 할 때에 한 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u>또는 변호인</u> <u>이 그 내용</u> <u>을 인정할</u> <u>때에 한하여</u> <u>증거로 할</u> <u>수 있다.</u>	----- ----- <u>그 진술</u> <u>자</u> ----- ----- ----- ----- ----- -----	----- ----- ----- ----- ----- ----- ----- ----- -----

백혜련의원안을 제외한 대다수의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로 일원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조서를 구별해 온 지난 형사증거법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0) 의안번호 제16499호
41) 의안번호 제2402호
42) 의안번호 제5016호
43) 의안번호 제9284호
44) 의안번호 제11747호
45) 의안번호 제16425호
46) 의안번호 제11318호
47) 의안번호 제11350호
48) 의안번호 제16543호
49) 의안번호 제20030호, 2019. 4. 30.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50) 금태섭 의원안의 경우 동조 제3항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표창원·이동섭·김석기·심상정의원안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

나. 바람직한 개정방안⁵¹⁾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②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작성되었음이 증명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5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개혁 5대 과제 이슈리포트(2017), 33-34쪽 ; 본 입법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현행법	개정안
<p>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p>	<p><삭제></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삭제></p>
<p>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p>	<p><삭제></p>

IV. 반대론의 논거 검토

1.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절차의 원리에 의해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될 경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손쉬운 선택'에 경도될 될 우려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의 사건 구성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소송경제의 요청에 반함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무용한 증거조사를 강요하게 되어 소송경제의 요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무용한 증거조사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소송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인지 의문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경제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개정된다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백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을 벗어나서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판정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3. 검사의 지위 고려

현행법이 준사법기관이면서도 객관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신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검사에게 객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에게 피의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한 신용성의 보장은 현저히 약하며 이는 피신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점,⁵²⁾ 앞서 살펴본 피신조서의 작성과 관련한 현재의 부당한 실무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당하다.

나아가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보다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둔 취지에 대하여, “검사 이외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시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⁵³⁾을 근거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검사 작성 이외의 피신조서와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입법취지에 관한 판례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도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혹은 객관의무를 현재의 검찰 조직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대검찰청 산하에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이 운영되고 있는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수사권남용은 결코 쉽게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증거조작, 사건무마, 자백강요, 뇌물수수 등 검찰의 역사적 과오가 다수 드러난 현실 속에서, 검사의 공익적 지위를 논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우월성을 인정함으로써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나 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엄정히 이행하기보다 손쉽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무리한 수사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폐단을 낳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2호)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작성], 2016. 11. 10쪽

5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판결

4. 공판중심주의를 넘어선 ‘법원전제주의’의 우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어렵사리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 ‘법원중심주의’ 또는 ‘법원전제주의’가 될 것이라 비난하였다. 그러나 공판절차 외에서 행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이 공판정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규문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으로 수사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심증이 법관의 심증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충실한 공판심리를 통해서 막아보자는 것이며, 그 핵심적 통로가 검사 작성 피신조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증거능력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손쉽게 인정함으로써 말미암아 검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혜택을 주고 그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이른다면, 이러한 제도는 위헌에 해당할 우려도 있다.⁵⁴⁾

V. 결어

검사의 일방적 주장인 공소장이나 피신조서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이다. 이는 사건부담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어서는 안 될 핵심원칙이다. 법원은 조서의 죽은 글자로부터 진실을 캐내려 들지 말고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생생한 목소리, 얼굴빛과 진술태도 등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도 인정하듯이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공방을 통해서, 그리고 물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독일이나

54) 김인회,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2018), 495쪽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재판모습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결과를 조서로 확인하는 재판, 자백이 기재된 조서만 제출하면 거의 유죄가 인정되는 통과 의례적 재판, 자백이 증거의 왕의 권좌에서 요지부동인 재판을 경험하고 있다.⁵⁵⁾

피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있음에도 그의 진술을 들어보는 대신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쓴다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제 더 이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에 의지하는 수사과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법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기소여부와 공판을 대비하기 위한 수사여야 한다. 한마디로 게임은 공판정이라는 링 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벌어져야 한다. 어느 일방, 특히 검사가 변호인도 없는 폐쇄된 조사실에서 주도하는 수사절차가 본 게임화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절차의 중심에 서야 투명성도 확보되어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져 사법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백편중의 수사관행도 지양될 것이며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같은 위법수사의 유혹도 사라지게 되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⁵⁶⁾

현 시점에서 형사사법절차의 개혁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 이러한 취지의 다수 입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그 중 하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이다. 역사적으로도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개혁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그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더 이상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라는, 본질적 검찰개혁과제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民主司法**

55) 하태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2005. 6. 24. 개최) 자료집, 19-20쪽

56) 하태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2005. 6. 24. 개최) 자료집, 19-20쪽

민변의 목소리

(2019. 2. - 2019. 7.)

사법 관련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입장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 2019. 2. 1.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 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탄핵소추안을 발표하였으며, 어제(2019. 1. 31.) 추가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을 선정하여 2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 단체로서 위 탄핵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였는바, 금번 탄핵대상자 선정은 1차 선정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결과(공소장 포함)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법관을 추가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의 독립 침해·재판거래 등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자행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변은 시국회의의 참가단체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요구하여 왔다. 나아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법관 탄핵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 임무를 방기하였다.

한편 이틀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위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당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위 판결 자체는 종래의 사법농단과는 별개의 독립한 재판의 결과이다.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래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의 본질을 자칫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어제 탄핵소추안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변, 김경수 실형선고 성장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장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으로 탄핵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향후 양승태 등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장호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를 확대하여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 예고’를 하였다는 위 보도는 언론의 지나친 비약이다.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농단이 자행될 수 있었던 기존의 구조,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관료적 구조 개혁의 첫 걸음으로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나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법률의 문제이다.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 길 멀다 / 2019. 3. 6.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 길 멀다

-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처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8달 간 진행되어오던 사법농단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다. 임중헌·양승태 공소장 등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명시된 80여 명의 법관 중 단 10명만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수사 와 추가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 확보 등이 향후에도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또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모관계가 적시되었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추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검찰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혐의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일제 강제동원 재판 지연의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고 통상임금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

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이라는 이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사법농단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과,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점’ 양승태와 긴밀히 협력한 차한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와 정치권 재판청탁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부의 의중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재판 동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권의 재판청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미 의혹이 불거진 6명의 전·현직 의원 등을 비롯하여 새로이 추가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루 빨리 착수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되고 있는 징계사유 중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것도 많다. 대법원은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과 같은 숨방망이 징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제 기소된 10명 중 7명의 법관이 아직도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사소추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인 만큼,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현직 법관들과 추가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법관들에 대해 각각의 행위 사실을 토대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봉 (직인생략)

■ [공수처설치공동행동]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2019. 3. 28.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3월 28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 2019. 4. 11.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전략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있어도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의 이양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동 전략은 ‘전략과제’의 하나로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을 제시하며,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1)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며 이를 불법·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실천한다.
- 2)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
- 3) 정부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나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러한 전략과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가정보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

를 운영한다. 또한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안적합성 검증업무와 암호모듈 검증업무도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인지 의문이다.

동 전략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국가사이버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총괄·조정과 집행까지 담당하는 체제에서 과연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인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구조적 개혁없이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이버보안이 가능하겠는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동 전략의 수립 과정에 참여 요청조차 받은 바 없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이미 오래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바, 정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일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동 전략은 ‘사이버보안 법적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발표되었지만,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2019년 4월 1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 2019. 4. 11.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결정)를 변경하여,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여성은 낙태죄에 의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당해 왔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은 형벌 또는 출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낙태죄는 임신중단 수술과 약물에 의한 시술을 불법화하여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거주자, 의학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저학력자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이나 노동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낙태죄는 산아제한과 출산장려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었고,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형식의 이 법은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논의할 시간이다.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디정위]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 TF」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 2019. 4. 15.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 TF」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1시,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과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세 단체는 박근혜정부에서 시민을 무작위로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전과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천인공노할 이번 불법감청에는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정통부) 산하의 10개 전과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괴하고 1부만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감청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상상하기 어렵다.
3.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도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과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했고, 대검은 실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4. 패킷감청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들의 위헌적인 감청 관행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유병언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 끝.

■ [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 2019. 4. 16.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숨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 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공동논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19.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최근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우리는 법무부의 상고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형사 재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1심과 제2심을 거치며 국가의 범죄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입

증된 이 사건에서, 이번 상고는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할 뿐, 어떤 공익적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가의 손실을 더 크게 할 뿐이다. 법무부는 당장 상고를 취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고문조작 피해자 정영 씨가 안기부로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것은 1983년의 일이었다. 그를 간첩으로 만든 1차적 책임은 참혹한 고문을 가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안기부에 있지만, 이를 방조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심지어 증인신문조서까지 변조하면서 법을 왜곡한 검찰과 법원의 책임도 결코 덜하지 않다. 16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친 정영 씨는 세월이 흘러 천신만고 끝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제 손해배상을 받게 되리라는, 지극히 정당한 희망을 가졌다. 국가의 불법행위는 충분히 입증되었고,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금지해 피해자들이 구제받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연히 자신의 판례에 따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해 제2심 판결을 확정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2013년 12월 12일 판결에서 느닷없이 선례를 뒤엎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선례’를 날조했다. ‘재심 판결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뒤집어 엮은 것이다. 정영 씨 가족을 포함한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린 궤변이자 법 왜곡이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마지막 가능성이 열렸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의 소멸시효 조항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영 씨 가족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민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의 판결을 취소하고 정영 씨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국가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놓고 싸우면 되는 사건이 아니다. 정영 씨와 그 가족은 고문과 증거조작, 불공정한 재판 등 국가 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다.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고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 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해 국가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마당에 국가가 더 이상 책임을 벗어날 길은 없고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

사법개혁이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의 원칙에 맞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제4기 민주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 그리고 그 정부 스스로 표방한 가치와 거리가 멀다. 국가폭력 범죄를 부정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그래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기존 정권의 법무부, 검찰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힘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적폐’를 쌓으려 해서 되겠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벌이고 있는 일련의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과’의 말잔치가 아니라,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태도를 재검토하고, 민주정부다운 품위를 지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민주적 법치국가로 되돌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서 괴롭혀온 고문과 조작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게 해야 한다. 단지 피해자들을 괴롭힐 뿐인 재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시대는 변화했지만,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흔은 깊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가”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김홍일 의원에 대한 조 수석의 추모의 말은 민주정부의 사법정책으로 이어져 고문조작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는 일로 이어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고문피해자들은 고문의 야만성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피해의 현재성을 생생하게 재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힘없는 간첩 조작 피해자들은 그 고통에 손잡아주는 이 없이 고통의 극단에서 끝없는 국가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일단이 바로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권을 박탈한 판결이었다. 한편에서는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면서, 천신만고 끝

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민사 재심 판결을 얻어내 겨우 권리를 회복하려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사코 거부하며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무부가 벌이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고문조작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한다면, 법무부는 상고를 취하함이 마땅하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유사한 재판들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한 깊은 한과 원망을 품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정부, 촛불정부를 주장하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2019년 4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재단법인 진실의 힘

-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 2019. 4. 26.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는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다. 현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무단점거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에 대한 반 감금행위, 국회 의안과에 대한 점거와 기물파손행위, 국회 각종 회의실에 대한 점거 행위 등은 국회법상 회의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법률가 출신인 자유한국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발의와 해당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는 것뿐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의 법안처리도 아니고, 단순 법안발의와 패스트트랙 절차에 관해서까지 이토록 불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고 하는 법안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이다. 모두 국회가 오랫동안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천명했던 사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 국회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상반기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온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길 거부하면서, 개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제대된 된 국회 내에서 논의는 스스로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물리력 동원이라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지, 물리적 대치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몸싸움 등을 통한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을 위시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만든 법률이기도 하다.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다.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구현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을 더욱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일 뿐, 진보/보수의 프레임에 갇힐 사안이 아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더욱 실효적으로 척결하기 위함이지 당리당략에 구애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빠져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 나아가 그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방법마저 불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4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개혁입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다. 지금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2019. 4.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사법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1] / 2019. 5. 8.

■ [사법농단TF] [논평]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 2019. 5. 10.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5. 9., 검찰이 2019. 3. 5.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현직 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를 청구하였다. 다만 위 10명의 징계청구대상자 중 기소되지 아니한 5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판업무에서의 배제 조치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 10명에 대한 징계로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이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이는 단순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문제로만 축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추락하였는바, 이를 바로잡을 일차적인 책임도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국민 누구나 투명함을 인정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 사법농단 사태에 관

여한 것으로 밝혀진 법관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 초기부터, 사법부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불충분한 조사와 최소한의 징계만을 한 채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을 모두 소진하였고, 이제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로 모든 내부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과연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옳게 인식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지연되면서, 다수의 사안에 있어 징계시효의 도과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2019. 5. 9.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2019. 3. 5.자 66명의 법관에 대한 비위 통보 당시 이미 현직 법관 66명 중 32명에 관한 통보내용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상태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검찰의 수사를 거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기소되어 구체적인 사실이 일응 알려진 2018. 11. 이후에라도 사법부 스스로 필요한 조사를 거쳐 징계청구를 하였다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 징계시효의 도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백보 양보하여 2019. 3. 5. 검찰의 비위 통보 이후의 사정만을 국한하여 살펴보더라도, 비위 통보 이후 60일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징계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법관의 언론 보도 대필의혹 등 중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징계시효 도과의 문제를 검찰의 비위 통보 시기와 연결하여 해석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실만을 밝혔을 뿐, 징계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징계대상자,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함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징계 청구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는 단순한 법관 개개인의 사적 비위 내지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내의 조직적인 위헌·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공적 사안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이익형량의 요소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징계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는 ‘깜깜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징계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지 아니한 5명의 피징계청구법관에 대하여 직무배제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는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해태, 법관의 품위 및 위신 손상에 해당하느냐, 대법원장의 징계청구는 징계청구권자 스스로 위 피징계청구법관에게 위 징계사유 중 하나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은 위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해 피징계청구법관이 계속하여 재판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국민들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을 방해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결국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청구는 대단히 늦었고 소극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이로서 사법부 스스로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도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법농단 사태는 핵심 관여자 몇 명이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하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절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관철하여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헌법적 추궁을 위해, 이미 수 차례 논의되었던 법관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사법행정개혁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진척시켜 입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9. 5.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봉

■ [논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 2019. 5. 16.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각 채이배·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수사권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모임은 이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간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해 온 권한을 분산하고, 인권친화적 형사절차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 대하여 그간 검찰이 보인 태도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밝힌 공식입장은 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 문 총장은 수사권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수사지휘권의 폐지, 경찰에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그러나 위 법률안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의 우려는 침소봉대에 가깝다. 먼저 법률안은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소·고발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라도, 모든 수사 자료가 검찰로 송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송부된 자료의 검토를 거친 후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여러 통제장치도 법률안에 담겨 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통제에 있어 검찰이 우려하는 정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률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고소·고발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어, 수사절차에 있어 국민의 권익 옹호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신속처리안건을 자신의 조직 권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과 시민의 시선에서 성찰하고 대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 물론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는 향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두 법안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보장되는 안건심사 과정을 통해 아래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로,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1차적 직접수사의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여전히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있다. 국회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입각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무일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된 1차적 직접수사 범위 조정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발언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검찰의 조직개편 방안 제시 없는 이와 같은 발언은 공허한 국면전환용 ‘선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큰 관련성이 없는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직접수사권 범위 축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송부할 때 60일 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 검토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사건 기록의 반환 시한과 관련하여서는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제장치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결여되어 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표명에서도 볼 수 있듯, 재정신청 제도 확대는 검찰도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법안 논의 과

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 모임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 개정 내용이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했던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단행되던 인권침해적 조사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 부칙은 해당 개정 조항의 시행일을 최대 4년 간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예 조항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혁 의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조항의 개정과 즉시 시행에 대하여 향후 국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임은 그간 논의되어 왔던 경찰 개혁과제들이 국회에서 보다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강화될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1) 정보경찰 폐지 2)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실질적 분리, 3) 자치경찰제의 시행, 4)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사체계의 확립 등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의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 2019. 5. 20.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2019. 4. 30.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강요,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인정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우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총 62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4차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자료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추궁하면서 총123회에 걸쳐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짜증내듯 질문을 던지고, 압박지르고,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추궁을 하였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경찰은 위와 같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언동을 하였고, 피의자의 진술할 권리, 진술한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56조 제1항은 경찰관이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진술강요는 이와 같은 수사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후의 형사 절차에서 그 자백을 배척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고, 형사절차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방어권행사는 유명무실해왔다. 따라서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수사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진다.

4. 경찰은 2018. 10. 8. '북부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으로 피의자의 성명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되도록 하였다.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일탈과 신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결국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피해자 개인과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무관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실화의 가능성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여 안전관리 부실 관리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결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5.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아쉬운 점은 피의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당시 피의자에게 '한국말을 잘하는데 왜 통역이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통역 없이 수사를 받을 뻔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통역의 존재는 필수적인 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전문 통역인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침해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쟁점이 인정되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잘못된 수사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을 대조했을 때 부적절한 삭감, 수정, 변경 조치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6. 현재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은 검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기소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라도 검찰조사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에 대한 집중이 아닌,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 2019. 5. 30.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 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 되고 있어
-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1. 지난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민주연구원장)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총선개입이 두렵다며, 서훈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5월 28에는 고발까지 진행했다. 만남 자체가 적절치는 않으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보위에 계류중인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고 국내정보 수집을 막는 국정원 개혁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고발은 정치공세에 가깝다.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행동이 설득력을 얻고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국정원법을 처리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을 직무범위에서 삭제해 정치개입의 여지를 없애면 된다.

2.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자유한국당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과거 ‘총풍사건’을 불러오지 않더라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지금 감옥에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21일 모임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서둘러 고발한 것도 내년 선거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미리 차단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입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5월 27일 논평에서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정보기관’이라면서 그런 기관의 장인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정치개입 등을 막기 위한 국정원법 개혁을 반대해온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의 입장¹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진행된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 때는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해 국정원 개혁작업을 반대했고,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불거진 2013년에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 내부의 운영상의 문제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4. 자유한국당이 진정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를 여는데 합의하고, 계류된 14개의 국정원 개혁 법안들을 논의해 국정원법 개정애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협상력을 발휘해 정보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힘을 합쳐 현재 계류 중인 개혁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일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9년 5월 30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논평]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종료에 부
쳐 / 2019. 6. 3.

검찰 과거사위원회·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종료에 부쳐

- 검찰은 지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이 5월 말로 종료되었다.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지난 2017년 12월 첫 걸음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이다. 그 동안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사건(총17건)을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하였고,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선정된 조사대상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대해서 재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스스로 과오를 평가한 적 없는 검찰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한다.

우리 모임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서 활동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위원들과 조사단원의 노력으로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구성과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역시 적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철저한 검찰의 과거사 정리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우선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 및 촉구사항 중 검찰이 수용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오히려 조사대상인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단에 외압을 가하거나 위원과 조사단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조사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진정으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활동기한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면 이는 검찰이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말 뿐인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시간적 제약과 권한의 한계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한 충분한 진상조사 결과를 도출하는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조직구성과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대상 사건기록을 실제 검토하고 조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권한과 관련하여 문무일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검찰 내부의 감찰에 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여하겠다고 하였지만, 그에 부응하는 적극적 의지와 뒷받침은 부족하였다.

대검찰청에 소속된 진상조사단은 충분한 조사인력과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못했다. 조사단은 검찰 외부에서 위촉한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들과 검찰 내부에서 파견된 검사·수사관이 함께 팀을 이루어 운영되었는데, 외부단원은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외부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또한, 조사

단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조사단장이 임명되지 않고, 조사과정이 오로지 개별 팀 판단에 따라 운영됨으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조사과정의 언론 대응, 조사단에 대한 부당한 외압, 조사단원들의 중도 사임으로 인한 사건의 재배당 등)에 대해 대검찰청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외부단원들은 검찰 내부 업무망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고, 최소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출석을 통보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 인적조사는 오로지 조사 대상자의 협조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검찰 과거사위가 이제 종료되었으나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많고 무겁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검찰이 가진 공권력이 검찰 내부의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검찰 밖에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 근거한 조사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아니한 한계 속에서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미완으로 남게 되바, 이번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여 향후 검찰의 철저한 과거사 정리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검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1. 검찰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1. 검찰은 검찰 과거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1. 검찰은 철저한 검찰의 과거사 정리를 위한 평가와 논의를 계속하라.

2019년 6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성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
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 2019. 6. 18.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기무사’라 함)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을 통해 재일조선인총연합과 연계된 ‘간첩’ 사건을 기획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기무사는 민주주의국민행동 대표인 함세웅 신부를 비롯하여 그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첩보활동을 벌였고, ‘리스트’와 ‘조직도’를 그려 간첩사건을 기획하여 2017. 2. 탄핵 정국에서 이를 발표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함세웅 신부나 사회단체 관계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정치인 등 그 누구라도 민간인의 ‘동태를 파악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이는 그 자체로 범죄이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등 다양 다종한 범죄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고, 촛불시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하여 계엄을 발령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무사는 4·19 혁명,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등 개혁의 요구가 대두될 때마다 개명을 거듭해왔을 뿐, 본질적인 개혁은 거부해 왔다. 나아가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지만, 기무사의 권한과 임무는 이름과 몇몇 자구 이외에 수정된 것이 없고, 그것으로 기무사의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군 내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불법적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시도한 것이다. 이는 기무사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발생한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수사기능을 함께 가질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나아가 이번 기무사의 행위는 간첩 조작을 통해 국가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억누르려 한 것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불법적 행태로서, 결단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미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고, 촛불시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준비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외면한 위 사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된 채,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임은 위 세월호 가족 사찰 사건, 계엄령 불법 동원 사건에 더하여, 이번 간첩기획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무사 권한의 근거가 되는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기무사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중단 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 [사법위] [논평] 대법원장은 스스로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2019. 7. 5.

대법원장은 스스로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2019. 7. 5.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 민변 사법위원회의 입장

대법원은 오늘(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이하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의 목적은 ‘종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법행정에 관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종래에도 자문기구는 있었다. 자문기구가 없어서 사법농단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결국 핵심은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를 추인해주는 허수아비 기구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규칙안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법관이 차지

규칙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기구는 대법원장 1인,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위원 4인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2명을 추천하는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회의의 비법관 위원 4명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규칙안에는 비법관 위원의 선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임의로 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지명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장을 제외한 9인 중 6인이 친 대법원장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고 나머지 3인 또한 법관이라는 점에서 자문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법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들러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법관들의 폐쇄적 문화, 특권주의, 조직보신주의는 사법농단 사건 내부 조사과정에서의 은폐와 현 재판절차에서의 지연전략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재판받는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문회의에 비법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인사분과위원회에도 비법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 자문회의가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규칙안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1년에 4번 모이는 것이 전부인데다가 위원들은 모두 비상근이다. 비상근위원들이 1년에 4번 모여서 사법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문기구는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처리하는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3.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대법원장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상근법관의 수를 줄여 2018년 대비 절반정도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이 35명이었으니, 내년은 17명 정도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를 공언하고서도 2018. 12.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탈판사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률상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장이 오늘 밝힌 바대로 하더라도 대법원장 임기 내에 탈판사화를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사법행정개혁의 핵심 중 핵심은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임을 다시금 명확히 밝힌다.

대법원은 규칙안이 진정한 개혁안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법원의 반개혁적인 규칙안이 국회에서의 개혁 논의에 일종의 가이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행정개혁의 완성은 결국 법원조직법의 개정 등 법제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개특위는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사법행정개혁이라는 시대의 임무를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2019. 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 [첨부1] [사법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

- 법무부가 2019. 3. 29. 법무부공고 제2019-80호 공고에 따라 입법예고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함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법률안에 대한 민변 사법위원회의 의견

가. 들어가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형사절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무기대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제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형사피고인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사건별로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사, 각 고등법원 관할 별로 법원이 위촉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기소 전 형사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주도하는 국선변호제도에 대하여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독립적 변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는 그 범위와 대상이 협소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기존 제도의 한계와 비판을 답습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제도운영의 주체 측면

법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 주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며,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합니다)를 설치하여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발 및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률안 제19조의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법인(「법률구조법」 제9조)으로, 그 이사는 법무부장관이 임명(「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하고, 예산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법률구조법」 제29조 제2항)이며, 업무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법률구조법」 제35조).

한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의 외청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개별 검사에 대하여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7조 제1항) 및 직무이전권(「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검찰청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바, 법률안에 의하면 개별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를 수행하여야 할 검찰과,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조력하여야 하는 변호인이 직·간접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게 되므로, 결국 상호간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소정의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라 함)의 경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안과 같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게 될 경우, 형사피해자를 조력하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와 가해자인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서 공존하는 형태를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이 또한 이해상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국선 변호를 담당하는 제도의 운영 주체는 법무부 또는 법무부 산하기관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독립된 제3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제도운영의 물적 범위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법률구조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 확대되는 법률구조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체포된 피의자’에 머물게 됩니다(법률안 제19조의2 제1항).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 피의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가장 높은 시기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증거가 드러나며, 피의자의 진술도 구체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적 수사 욕구가 가장 높은 시기라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따라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이전의 임의적 진술 단계와 같은 초동수사의 국면부터 운영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하

는 체포에 나아간 이후에야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채, 당해 변호인의 업무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및 피의자 신문 참여’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의 범위는 수사 초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라. 제도운영의 시적 범위 관련

본 법률안에 따른 피의자국선변호인은, 그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 당해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변호 활동을 담보하지 못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관점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온 변호인이 기소된 이후 변호인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로운 변호인에게 새로이 모든 정보를 다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이 선임된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당해 사건의 수사단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새로이 사건을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 충분치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는 피의자 단계부터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전환된 이후까지 동일한 변호인이 계속하여 조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성안되어야 합니다.

마. 소결

법률안은 피의자 단계의 법률구조를 확장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범위를 일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운영의 주체, 제도운영의 물적·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과거 논의되어 왔던 제도적 한계와 비판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법률안의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결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5.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귀중